제1679호
2018. 11. 28.(수)

발 행 인 : 영 등 포 구 청 장
편 집 인 : 홍 보 전 산 과 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전 화 : 02-2670-7554

영등포구보

규 칙

· 제74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 ····· 1

훈 령

· 제13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원외 상근인력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 2

입법예고

· 제2018-154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4
· 제2018-155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7
· 제2018-155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1
· 제2018-15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33
· 제2018-155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40

고 시

· 제2018-102호 지적기준점(도근점) 측량 성과 고시 ····· 76
· 제2018-104호 도로명주소 도로구간 변경 및 폐지 고시 ····· 81
· 제2018-105호 도로명주소 부여, 폐지 고시 ····· 91

공 고

· 제2018-1530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 ····· 96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영등포구홈페이지<http://www.ydp.go.kr.(행정정보→행정자료→영등포구보)>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02-2670-7554 / 전송 : 02-2670-3581)
◎ 구보발행일은 매주 목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발행, 공포 등 필요시 발행일 조정 가능)
◎ 구보게재접수는 D-3일(월요일)까지 접수

D-3접수 → D-2일 편집 및 교정 → D-1일 인쇄 및 제책 → D일 보급 및 배포

영등포구

영등포구 발간등록번호
3180194-0103-2018

규 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칙 제74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채 현 일 인
2018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위원회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훈 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훈령 제13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원외 상근인력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채 현 일 ㊞
2018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원외 상근인력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원외 상근인력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정원외 상근인력의 정수표(제7조제2항 관련)

1. 250일이상 고용상근인력의 정수

부서별	계	단 순 노 무 원					도 로 보수원	환 경 미화원	의료 급여 관리사	도로굴착·복구 감독업무 보조원	직장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방문 간호사	통합 사례 관리사	아동 통합 사례 관리사	지역 사회 복지사	청사 청소원
		소계	시 설 물 장비유지 관리인부	현장공사·작업등 현업인부	현장지도 단속감시 현장인부	단순잡역 조무인부										
총 계	240	13	6	7			7	171	2	2	4	22	5	1	1	12
청소과	171							171								
푸 른 도시과	1	1	1													
도로과	9						7			2						
치수과	7	7		7												
사 회 복지과	2								2							
자 치 행정과	4	4	4													
가 정 복지과	7	1	1								4			1	1	
건 강 증진과	22											22				
복 지 정책과	5												5			
총무과	12															12

2. 청원경찰의 수

부 서 별		합계	경 비 청원경찰	비고
총 계		4	4	
본청	소 계	4	4	
	총 무 과	4	4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8-154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신고포상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신고 및 접수 등 (안 제3~4조)
○ 포상금 지급 대상자 요건 (안 제5조)
○ 포상금 지급 신청 절차 (안 제6조)
○ 포상금 지급 기준, 결정, 지급 절차 (안 제7조~8조)
○ 포상금 지급 제한 및 지급절차 종결 사항 (안 제9~10조)
○ 포상금 이의신청 및 환수 절차 (안 제11~12조)
○ 비밀유지 의무 규정 (안 제13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재정관리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전화: 2670-7522, 팩스: 2670-75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법령 위반 등의 행위”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부서를 말한다.

제3조(법령 위반 등의 행위의 신고) 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방문·우편·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은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나 증거자료 등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포상금의 지급은 총괄부서의 장이 처리하고,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은 사업부서의 장이 처리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신고 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고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에게 구체적인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법령 위반 등의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이하 “신고등”이라 한다)하였을 것
2. 법령 위반 등의 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였을 것

3. 신고등을 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법 제32조의8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법 제32조의8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하고 그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의11제1항에 따른 신고등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등을 한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 신청)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등"이라 한다)가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신고인등이 수사기관에 고발한 후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신고 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결정)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로 하며, 1억원 이하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포상금 지급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은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등을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법령 위반 등의 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등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등을 한 경우
4. 거짓으로 신고 등을 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등을 한 경우

제10조(포상금 지급 절차의 종결) 구청장은 신고인등의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포상금 지급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①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고인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심의의원회는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신고인등으로 하여금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인등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고인등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취소와 환수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등을 종합한 안건을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와 환수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결정의 취소 또는 환수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환수 결정 내용, 환수금 납부 방법 등을 지체 없이 신고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인등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신고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①신고인 (지정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집) 휴대전화)	E-mail	

②신고사항	신 고 일	년 월 일	
	피신고인 (지방보조사업자)	성명 또는 단체명(대표자명)	
		소 재 지	
	신고 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	
	증거자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지정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지정대표자)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법령 등 위반행위 입증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1. ①란에는 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E-mail 주소를 기재합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신고인이 신고일, 피신고인(지방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신고 내용의 요지 등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신고 접수 처리부

접수 번호	구분	접수일자 (수사기관 접수일)	접수방법 (방문, 우편, 전자문서 등)	신고인 인적사항			신고(고발)내용			처리결과		결과 통지일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사업명	보조 사업자	부정수급 내용	인용 여부	포상금 (단위: 원)	

※ 작성요령

1. “구분” 란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에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는 “고발” 로 기재합니다.
2. “접수일자” 란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에 신고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접수한 날짜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는 고발인이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 시 제출하는 신청서의 첨부서류로 확인되는 고발 접수 일자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신고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비고

위와 같이 ([ ]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 행위 신고서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접수담당: (서명 또는 인)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신고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비고

위와 같이 ([ ]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 행위 신고서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접수담당: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

신고 접수번호				
①신고인 (지정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집)		(휴대전화)
②신고사항	피신고인 (지방보조 사업자)	성명 또는 단체명(대표자)		
		소재지		
	신고내용			
③조사결과 (사실확인결과)	법령 등 위반여부	여( ), 부( )	보조결정 취소 또는 반환 대상 금액	보조결정 취소(여, 부) (금 원)
	법령위반 사항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 유의사항 ·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된 조사내용과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		

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담당부서장: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90일

①신청인 (지정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집) 휴대전화)	E-mail	

②신고(고발) 사항	신고(고발)기관		신고(고발)일	20 년 월 일
	피신고인 (지방보조사업자)	성명 또는 단체명(대표자명)		
		소 재 지		
	신고(고발)내용 요지			
	조사·수사기관		결과통지일	20 년 월 일
	통지내용			

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 여부	[ ] 있음 (기관명 :) [ ] 없음
	수령 여부	[ ] 있음 (금액 :) [ ] 없음

④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지정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지정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가.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나.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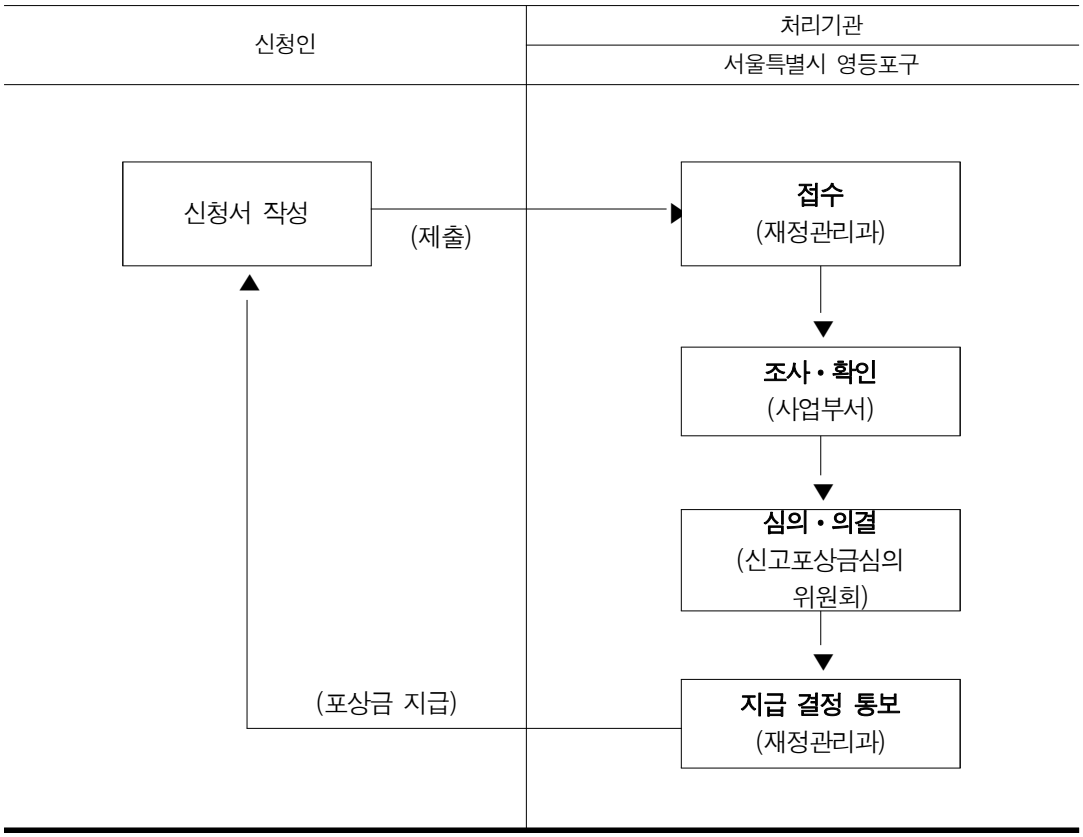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고포상금을 수령할 신청자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3. 고발에 의한 경우 고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1. ①란에는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E-mail 주소를 기재합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신청인이 신고(고발)기관, 신고(고발)일, 피신고인(지방보조사업자), 신고(고발)내용의 요지, 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과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짜 등을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신고를 이유로 다른 법령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4. ④란에는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명과 예금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포상금 결정 통지서

포상금 신청 접수번호		

포상금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대상사건	사건명	
	피심인 (피조사인)	
	신고내용	

지급결정 사항	결정일자	20 년 월 일	
	결정내용	주문	대상자 에게 포상금 원을 지급함 (대상자 의 포상금 지급 신청을 기각함)
		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안 내 >

※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포상금 지급 후에도 신청인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등 환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포 상 금 결 정 이 의 신 청 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포상금 신청 접수번호		
포상금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결정사항	결정일자	20 년 월 일
	결정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귀 구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8-155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경쟁력있는 도시 영등포' 로 발빠르게 다가가기 위해 전략사업들을 총괄 추진 할 '미래비전추진단' 설치에 따른 4급 일반직 증원을 위해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

2. 주요 내용
가. 정원의 총수 개정(안 제2조)
○ '1,412' 를 '1,413' 로 개정(증 1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385' 를 '1,386' 로 개정(증 1명)
나. 정원의 직급별 정원표 개정(별표 3)
○ 총계 '1,412' 를 '1,413' 로 개정(증 1명)
○ 일반직 총계 '1,407' 을 '1,408' 으로 개정(증 1명)
- 일반직 4급 총계 '8' 을 '9' 로, 본청 '6을 '7' 로 개정(증 1명)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전화 : 2670-3323, 팩스 : 2670-357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412명”을 “1,413명”으로, 같은 조 제1호 중 “1,385명”을 “1,386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 직급별		총 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413	1,413			
정무직		1	1			
일반직 계		1,408	1,408			
일반직	3급	1	1	-	-	-
	4급	9	7	1	1	-
	5급	65	33	2	12	18
	6급 이하	1,331	1,331			
	전문경력관	2	2			
별정직 계		4	4			
6급 상당 이하		4	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영등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412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385명 2.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1,413명 ----------. 1. ---------- 1,386명 2. (현행과 같음)

[별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 직급별		총 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412	1,412			
정무직		1	1			
일반직 계		1,407	1,407			
일반직	3급	1	1			
	4급	8	6	1	1	
	5급	65	33	2	12	18
	6급 이하 소계	1,331	1,331			
	전문 경력관 소계	2	2			
별정직 계		4	4			
6급 상당 이하		4	4			

[별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 직급별		총 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413	1,413			
정무직		1	1			
일반직 계		1,408	1,408			
일반직	3급	1	1			
	4급	9	7	1	1	
	5급	65	33	2	12	18
	6급 이하 소계	1,331	1,331			
	전문 경력관 소계	2	2			
별정직 계		4	4			
6급 상당 이하		4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8-155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미래비전추진단' 설치 등 행정 수요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직급별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

2. 주요 내용

가. 총 정원 조정 내역

○ 총정원 증원 1,405명 → 1,413명(8명 증원)

- 4급상당 한시조직 신설에 따른 지방서기관 1명 증원
- 2018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국가정책에 따른 직급별 인력충원 6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18.10.04)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배치를 위한 증원 1명

○ 기관별 정원 조정

- '구 본청' : 903명 → 908명(5명 증원)
- '보건소' : 114명 → 117명(3명 증원)

나. 정원의 직급별 정원표 개정(별표)

구분	합계			4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전	후	증감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총괄(일반직)	1,400	1,408	8	8	9	285	290	454	460	362	361	225	222	
행정	705	708	3	6	7	201	201	243	242	160	160	52	55	
임기제(행정)	10	11	1			0	1	2	2	1	2	6	5	
세무	86	87	1			18	19	35	35	27	27	6	6	
사회복지	177	178	1			12	13	30	34	36	41	95	86	
녹지	16	16	0			3	3	3	5	5	4	4	3	
시설(토목)	52	54	2			6	6	11	17	20	17	11	10	
시설(건축)	33	36	3			7	8	8	12	10	9	6	5	
운전	56	56	0			3	3	32	25	21	20	0	8	
시설관리	20	17	-3					6	4	8	7	6	6	

○ 정원 조례 개정 사항의 직급별 정원 증원사항 반영
- 4급 1명 증원 : 8명 → 9명(구 본청: 6→7명)
- 6급 5명 증원 : 283 → 288명
  ▸ 증원(5)행정 1, 세무 1, 시설(건축) 1, 사회복지 1, 방호 1
- 7급 6명 증원 : 454 → 460명
  ▸ 증원(16) : 사회복지 4, 녹지 2, 시설(토목6, 건축4) 10,
  ▸ 감원(10): 행정 1명, 운전 7, 시설관리 2
- 8급 1명 감원: 362 → 361명
  ▸ 증원(7): 행정 2, 사회복지 5
  ▸ 감원(8): 녹지 1, 시설(토목3, 건축 1) 4, 운전1, 시설관리 1, 방호 1
- 9급 3명 감원: 225 → 222명
  ▸ 증원(9): 행정 1, 운전 8
  ▸ 감원(12): 사회복지 9, 시설(토목)1, 시설(건축) 1, 녹지 1

3. 의견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당산동3가) 전화 : 2670-3323, 팩스 : 2670-357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현원과 정원이 일치될 때까지 당해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 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 직급별	합계	구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413	908	27	117	361
정무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반직 총계	1,408	905	25	117	361
3급 소계	1	1			
부 이사관	1	1			
4급 소계	9	7	1	1	0
서 기 관	6	5	1		
서기관또는 기술서기관	2	2			
기술서기관	1			1	
5급 소계	65	33	2	12	18
행정	20	19		1	
행정 또는 사회복지	4	4			
행정,사회복지,보건 또는 환경	18				18
행정,공업,보건 또는 환경	1	1			
행정 또는 녹지	1	1			
행정 또는 별정	2		2		
시설	4	4			
행정 또는 시설	4	4			
행정 또는 보건	1			1	
행정,의무,간호 또는 약무	1			1	
의무 또는 약무	1			1	
의무	8			8	
6급 소계	288	201	6	20	61
행정	173	122	3	9	39
세무	19	19			
행정 또는 녹지	3	3			
시설	16	16			
공업	12	12			
행정 또는 공업	2	2			
행정 또는 별정	2		2		
행정 또는 전산	1	1			
행정,수의 또는 보건	1			1	
행정 또는 시설	8	8			

기관별 / 직급별	합계	구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보건,공업 또는 환경	2	1		1	
보건 또는 의료기술	1			1	
의료기술	1			1	
행정,약무,보건또는의료기술	1			1	
약무 또는 보건	2			2	
간호 또는 보건	1			1	
간호	2			2	
사회복지	10	6			4
행정 또는 사회복지	22	4			18
보건진료	1			1	
행정 또는 통신	1	1			
전기운영	1	1			
필기운영	1	1			
운전	3	3			
속기	1		1		
방호	1	1			
7급 소계	460	332	6	38	84
행정	199	128	4	12	55
세무	35	35			
사회복지	34	16			18
행정 또는 사회복지	45	35			10
공업	18	18			
녹지	4	4			
보건	6	3		3	
시설	24	24			
행정 또는 시설	11	11			
행정 또는 공업	1	1			
환경	3	3			
행정,녹지 또는 시설	1	1			
행정 또는 통신	3	3			
의료기술	3			3	
약무 또는 보건	3			3	
간호	13			13	
행정 또는 전산	3	3			
기계운영	3	3			
전기운영	7	7			
필기운영	6	6			
위생(사역)	1			1	
운전	25	22		3	

기관별 / 직급별	합계	구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시설관리	4	3			1
속기	2		2		
방호(경비)	6	6			
8급 소계	361	212	9	36	104
행정	118	61	3	8	46
세무	27	27			
사회복지	41	14			27
행정 또는 사회복지	44	34			10
공업	17	16		1	
녹지	4	4			
보건	5			5	
행정 또는 시설	24	24			
시설	10	10			
환경	1	1			
전산	4	4			
의료 기술	6			6	
간호	12			12	
방재안전	1	1			
통신	1	1			
녹지 또는 시설	1	1			
필기운영	10	4	1	1	4
운전	21	1	2	1	17
시설관리	7	6		1	
속기	1		1		
방호(경비)	5	2	2	1	
원예운영	1	1			
9급 소계	222	117	1	10	94
행정	53	33	1	4	15
세무	6	6			
사회복지	87	10			77
행정 또는 사회복지	5	5			
공업	8	8			
보건	3			3	
보건 또는 의료기술	1			1	
시설	11	11			
행정 또는 시설	10	10			
전산	2	2			
녹지	3	3			

기관별 / 직급별	합계	구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농업	1	1			
환경	1	1			
방재안전	1	1			
통신	2	2			
행정 또는 전산	1	1			
의료기술	2			2	
식품위생	1	1			
운전	18	17			1
시설관리	6	5			1
전문경력관 소계	2	2			
나군	2	2			
화생방관리	2	2			
별정직 총계	4	2	2		
6급상당 소계	1	1			
비 서	1	1			
7급상당 소계	2	1	1		
비 서	2	1	1		
8급상당 소계	1		1		
비 서	1		1		

신 · 구조문 대비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기관별 / 직급별	합계	구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기관별 / 직급별	합계	구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405	903	27	114	361	총 계	1,413	908	27	117	361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1	1			
구 청 장	1	1				구 청 장	1	1			
일반직 총계	1,400	900	25	114	361	일반직 총계	1,408	905	25	117	361
3급 소계	1	1				3급 소계	1	1			
부 이사관	1	1				부 이사관	1	1			
4급 소계	8	6	1	1		4급 소계	9	7	1	1	0
서 기 관	5	4	1			서 기 관	6	5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기술서기관	1			1		기술서기관	1			1	
5급 소계	65	33	2	12	18	5급 소계	65	33	2	12	18
행정	20	19		1		행정	20	19		1	
행정 또는 사회복지	4	4				행정 또는 사회복지	4	4			
행정, 사회복지, 보건 또는 환경	18				18	행정, 사회복지, 보건 또는 환경	18				18
행정,공업,보건 또는 환경	1	1				행정,공업,보건 또는 환경	1	1			
행정 또는 녹지	1	1				행정 또는 녹지	1	1			
행정 또는 별정	2		2			행정 또는 별정	2		2		
시설	4	4				시설	4	4			
행정 또는 시설	4	4				행정 또는 시설	4	4			
행정 또는 보건	1			1		행정 또는 보건	1			1	
행정,의무,간호 또는 약무	1			1		행정,의무,간호 또는 약무	1			1	
의무 또는 약무	1			1		의무 또는 약무	1			1	
의무	8			8		의무	8			8	
6급 소계	283	198	6	18	61	6급 소계	288	201	6	20	61
행정	172	123	3	7	39	행정	173	122	3	9	39
세무	18	18				세무	19	19			
행정 또는 녹지	3	3				행정 또는 녹지	3	3			
시설	15	15				시설	16	16			

기관별 / 직급별	현 행					기관별 / 직급별	개 정 안				
	합계	구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합계	구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공업	12	12				공업	12	12			
행정 또는 공업	2	2				행정 또는 공업	2	2			
행정 또는 별정	2		2			행정 또는 별정	2		2		
행정 또는 전산	1	1				행정 또는 전산	1	1			
행정,수의 또는 보건	1			1		행정,수의 또는 보건	1			1	
행정 또는 시설	8	8				행정 또는 시설	8	8			
보건,공업 또는 환경	2	1		1		보건,공업 또는 환경	2	1		1	
보건 또는 의료기술	1			1		보건 또는 의료기술	1			1	
의료기술	1			1		의료기술	1			1	
행정,약무,보건 또는 의료기술	1			1		행정,약무,보건 또는 의료기술	1			1	
약무 또는 보건	2			2		약무 또는 보건	2			2	
간호 또는 보건	1			1		간호 또는 보건	1			1	
간호	2			2		간호	2			2	
사회복지	9	5			4	사회복지	10	6			4
행정 또는 사회복지	22	4			18	행정 또는 사회복지	22	4			18
보건진료	1			1		보건진료	1			1	
행정 또는 통신	1	1				행정 또는 통신	1	1			
전기운영	1	1				전기운영	1	1			
필기운영	1	1				필기운영	1	1			
운전	3	3				운전	3	3			
속기	1		1			속기	1		1		
방호(경비)	0	0				방호(경비)	1	1			
7급 소계	454	328	6	38	82	7급 소계	460	332	6	38	84
행정	200	129	4	12	55	행정	199	128	4	12	55
세무	35	35				세무	35	35			
사회복지	30	14			16	사회복지	34	16			18
행정 또는 사회복지	45	35			10	행정 또는 사회복지	45	35			10
공업	18	18				공업	18	18			
녹지	2	2				녹지	4	4			

기관별 / 직급별	현 행					기관별 / 직급별	개 정 안				
	합계	구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합계	구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보건	6	3		3		보건	6	3		3	
시설	16	16				시설	24	24			
행정 또는 시설	9	9				행정 또는 시설	11	11			
행정 또는 공업	1	1				행정 또는 공업	1	1			
환경	3	3				환경	3	3			
행정,녹지 또는 시설	1	1				행정,녹지 또는 시설	1	1			
행정 또는 통신	3	3				행정 또는 통신	3	3			
의료기술	3			3		의료기술	3			3	
약무 또는 보건	3			3		약무 또는 보건	3			3	
간호	13			13		간호	13			13	
행정 또는 전산	3	3				행정 또는 전산	3	3			
기계운영	3	3				기계운영	3	3			
전기운영	7	7				전기운영	7	7			
필기운영	6	6				필기운영	6	6			
위생(사역)	1			1		위생(사역)	1			1	
운전	32	29		3		운전	25	22		3	
시설관리	6	5			1	시설관리	4	3			1
속기	2		2			속기	2		2		
방호(경비)	6	6				방호(경비)	6	6			
8급 소계	362	219	8	35	100	8급 소계	361	212	9	36	104
행정	116	61	2	7	46	행정	118	61	3	8	46
세무	27	27				세무	27	27			
사회복지	36	14			22	사회복지	41	14			27
행정 또는 사회복지	44	34			10	행정 또는 사회복지	44	34			10
공업	17	16		1		공업	17	16		1	
녹지	5	5				녹지	4	4			
보건	5			5		보건	5			5	
행정 또는 시설	28	28				행정 또는 시설	24	24			
시설	10	10				시설	10	10			
환경	1	1				환경	1	1			
전산	4	4				전산	4	4			
의료 기술	6			6		의료 기술	6			6	

기관별 / 직급별	현 행					기관별 / 직급별	개 정 안				
	합계	구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합계	구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간호	12			12		간호	12			12	
방재안전	1	1				방재안전	1	1			
통신	1	1				통신	1	1			
녹지 또는 시설	1	1				녹지 또는 시설	1	1			
필기운영	10	4	1	1	4	필기운영	10	4	1	1	4
운전	22	1	2	1	18	운전	21	1	2	1	17
시설관리	8	7		1		시설관리	7	6		1	
속기	1		1			속기	1		1		
방호(경비)	6	3	2	1		방호(경비)	5	2	2	1	
원예운영	1	1				원예운영	1	1			
9급 소계	225	113	2	10	100	9급 소계	222	117	1	10	94
행정	52	31	2	4	15	행정	53	33	1	4	15
세무	6	6				세무	6	6			
사회복지	96	12			84	사회복지	87	10			77
행정 또는 사회복지	5	5				행정 또는 사회복지	5	5			
공업	8	8				공업	8	8			
보건	3			3		보건	3			3	
보건 또는 의료기술	1			1		보건 또는 의료기술	1			1	
시설	10	10				시설	11	11			
행정 또는 시설	13	13				행정 또는 시설	10	10			
전산	2	2				전산	2	2			
녹지	4	4				녹지	3	3			
농업	1	1				농업	1	1			
환경	1	1				환경	1	1			
방재안전	1	1				방재안전	1	1			
통신	2	2				통신	2	2			
행정 또는 전산	1	1				행정 또는 전산	1	1			
의료기술	2			2		의료기술	2			2	
식품위생	1	1				식품위생	1	1			
운전	10	10				운전	18	17			1
시설관리	6	5			1	시설관리	6	5			1
전문경력관 소계	2	2				전문경력관 소계	2	2			
나군	2	2				나군	2	2			

기관별 / 직급별	현 행					기관별 / 직급별	개 정 안				
	합계	구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합계	구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화생방관리	2	2				화생방관리	2	2			
별정직 총계	4	2	2			별정직 총계	4	2	2		
6급상당 소계	1	1				6급상당 소계	1	1			
비 서	1	1				비 서	1	1			
7급상당 소계	2	1	1			7급상당 소계	2	1	1		
비 서	2	1	1			비 서	2	1	1		
8급상당 소계	1		1			8급상당 소계	1		1		
비 서	1		1			비 서	1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8-15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영등포의 변화와 도약을 중점 추진하기 위한 미래전략추진단 및 부서를 신설하여 행정기구와 분담사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구정 핵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4급상당 한시기구인 '미래비전추진단' 신설(안 제3조, 제5조)

나. 민선7기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 신설 및 통합(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8조)

○ 미래비전추진단의 소통기획과, 사회적경제과 신설
○ 재정국의 일자리경제과 신설(지역경제과+일자리정책과)
○ 복지국의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신설

다. 수요자 중심의 알기쉬운 명칭 변경(안 제3조, 안 제10조)

○ 안전건설국 → 안전교통국

라. '4차산업시대' 대비를 위한 교육방향의 전환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안 제5조)

○ 교육지원과 → 미래교육과

마.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분장사무 조정(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10조)

○ 자원봉사(복지국 → 행정국)
○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와 점용료 부과·징수(생활환경국 → 재정국)
○ 토지의 사용·수용에 따른 보상(생활환경국 → 도시국)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총무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전화: 2670-3323, 팩스: 2670-357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단장 및 담당관·과장·동장의 직급 등) ① 구 본청 국장·단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 본청·보건소의 담당관·과장 등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 본청·보건소·동의 담당관·과장·동장 등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구 본청

제3조(국·단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미래비전추진단, 행정국, 재정국, 복지국, 생활환경국, 도시국, 안전교통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5조(미래비전추진단) ① 미래비전추진단에 소통기획과, 사회적경제과, 미래교육과를 둔다.

② 미래비전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기획·조정, 구정비전개발, 주민소통, 국제금융지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협치, 청년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육정책, 도서관운영 및 과학육성, 학교지원, 평생교육, 혁신교육지구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 홍보전산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관리, 인사, 직원능력개발 및 후생복지, 의회협력 및 대외교류에 관한 사항
2. 구정홍보, 구정의 정보화, 전산관리에 관한 사항
3. 동 행정 지원, 자원봉사, 자치회관 운영지원, 사회진흥단체 지원 총괄,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서관리, 민원처리,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에 관한 사항
5. 문화재 및 문화·예술, 생활체육, 체육시설,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제7조(재정국) ① 재정국에 재정관리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징수과, 부과과를 둔다.
② 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 주요 업무 평가, 법제심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2. 국·공유재산관리,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와 점용료, 계약, 물품관리, 지출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창출·지원, 지역경제진흥, 유통, 전통시장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4. 구세입 총괄 및 지방세 징수, 세외수입 총괄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부과,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관한 사항

제8조(복지국)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를 둔다.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서비스 자원개발·연계·관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생활보장, 자활사업, 장애인복지,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3. 여성정책, 보육 및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등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및 드림스타트, 외국인 및 다문화업무에 관한 사항
5. 어르신복지시설, 고령화 대책에 관한 사항

제9조(생활환경국) ① 생활환경국에 가로경관과, 청소과, 환경과, 푸른도시과를 둔다.
② 생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점상·가로정비 및 전문건설업 관리, 옥외광고물관리에 관한 사항
2. 생활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 청소대행업자 지도·감독, 환경미화원,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
3. 대기·수질·토양오염 관리,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소음·진동대책,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공원의 개발 및 관리 녹지보전, 조경계획·조경시설 및 생태계복원에 관한 사항.

제10조(도시국) ① 도시국에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를 둔다.
② 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동주택관리, 주택개량, 도시재개발·재건축, 무허가건축, 주택임대사업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의 수립·조정 및 결정, 재개발사업(도시형정비), 주거환경개선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3. 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건축물대장 관리, 건축허가·착공·준공, 건축물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토지관리·토지조사 및 지적, 개별공시지가, 도로명 주소 사업추진, 토지의 사용·수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제11조(안전교통국) ① 안전교통국에 도시안전과,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를 둔다.
② 안전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방재계획 수립, 재난 예방, 재난 복구대책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
2. 도로계획 수립·조정,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도로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3. 하수사업, 하천·유수지, 수방대책, 배수펌프장과 수문 기전설비에 관한 사항
4. 교통행정, 자동차와 건설기계등록, 교통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5. 주정차지도 단속, 교통시설 설치, 주차장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2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② 보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13조(보건소장) ① 보건소에 보건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 업무와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보건소) ① 보건소에 보건지원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위생과를 둔다.

제4장 하부행정기관

제15조(직무) ①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② 동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치회관을 운영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관리한다.
③ 동은 동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를 한다.
제16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관할구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그리고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행정동의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5조에 따른 미래비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가정복지과장"을 "보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가정복지과장"을 "보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복지과장"을 "보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가정복지과장"을 "보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⑤「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⑥「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⑦「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및 제4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각각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⑧「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가정복지과장"을 "아동청소년복지과장"으로 한다.
⑨「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기획담당관"을 "소통기획과장"으로 한다.
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⑪「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⑫「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⑭「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안전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⑮「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⑯「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마목의 "기획담당관"을 "미래비전추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라목의 "안전건설국"을 "안전교통국"으로 한다.
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의 "행정국장"을 "미래비전추진단장"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2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385-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지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8-155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래비전추진단 및 부서 신설을 위해『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 분담사무를 정비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미래비전추진단 신설 및 업무조정: 안 제5조

○ 혁신기획과 신설: 안 제6조
○ 사회적경제과 신설: 안 제7조
○ 미래교육과 명칭 변경 및 이관: 안 제8조
- 교육지원과 → ‘미래교육과’로 명칭 변경
- 행정국 → ‘미래비전추진단’ 으로 이관

나. 부서 신설 및 분담사무 정리

○ 일자리경제과 신설: 안 제12조
○ 보육지원과 신설: 안 제24조
○ 아동청소년복지과 신설: 안 제25조

다. 수요자 중심의 알기 쉬운 명칭 변경(안 제38조)

○ 안전건설국 → 건설교통국

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 업무조정

○ 자치행정과(안 제12조): 자원봉사업무 이관
- 복지정책과 → 자치행정과
○ 민원여권과(안 제13조): 오케이민원 신설
○ 재무과(안 제17조): 공공용지사용 및 변상금 부과징수 이관
- 가로경관과 → 재무과
○ 주택과(안 제32조): 전통시장 재건축, 재개발, 환경개선사업 이관
- 지역경제과 → 주택과

○ 부동산정보과(안 제37조): 보상업무 이관
- 가로경관과 → 부동산정보과
○ 치수과(안 제41조): 안양천·도림천 관리
- 푸른도시과 → 치수과(하천관리팀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전화: 2670-3324, 팩스: 2670-35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총무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본청의 국장·단장·담당관·과장의 직급 및 소속 기관·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과의 사무 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담당관 및 과장은 부구청장·국장·단장을 보좌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 한다.

제2장 구본청

제1절 보좌기관

제3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2.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3. 공직자 직무 및 기강감찰
4. 비위 사항에 대한 조사 및 비위 공무원의 징계 요구, 소청사항 처리
5. 구청장이 지시한 기관(부서)에 대한 감사
6. 상급기관 및 그 밖의 기관 감사 결과 집행 전말 처리
7. 구청장이 명한 조사 사항 처리
8.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 비위 통보 사항 조사 처리 총괄
9. 클린신고센터 운영
10. 보도 사항(신문, TV, 라디오 등) 중 중요 사항 조사 처리
11.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12. 환경순찰(시민불편사항 및 구청장 현장방문 지시사항 등) 업무 총괄

13. 민원사항 조사 및 처리 개선
14.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15. 직소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16. 구청장에 바란다(인터넷) 민원처리
17. 민원처리 사항의 확인·점검 및 종합 분석
18. 관급공사 현장 점검에 관한 사항
19. 구민감사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부패방지시책 추진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21.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순찰(간부 순찰 등)
22.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에 관한 사항
23.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4. 인권위원회 운영
25.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상담, 조사 및 처리
26. 현장행정에 관한 사항
27. 공공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
28. 공사·용역 원가계산 심사
29. 물품제조 및 구매 원가계산 심사
30. 설계변경 심사

제2절 미래비전추진단

제4조(미래비전추진단) 미래비전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소통기획과) 소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 주요업무 정책 수립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대통령·국무총리·시장·구청장 지시사항 총괄에 관한 사항
3. 주요사업 공약사항 총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구정 운영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연간, 월간, 단기 주요업무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계절별 종합대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사무위임 및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사항
8. 위원회 총괄 및 정비에 관한 사항
9. 현안 및 정책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구청장이 지정하는 분야의 계획 수립·조정·확인·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11. 지방이양 사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미래구정발전과제 기획 및 분석 총괄
13. 균형발전 업무에 관한 사항
14. 장기 구정 정책 과제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15. 구정백서, 구정현황 작성에 관한 사항
16. 성과관리계획 및 성과평가 총괄 조정

17. 목표관리제 총괄 조정 및 관리
19. 영등포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및 시행
20. 지역사회혁신사업 발굴 지원
21. 사회혁신사례 전파 및 확산
22. 지역인구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23. 미래비전위원회 운영
23. 영등포신문고 운영
24. 영등포1번가 소통플랫폼 운영
25. 타운홀미팅 운영
26. 국제금융특구지정 추진 및 금융도시 육성전략 계획 수립
27. 다국적 금융기업 유지
28. 외국 투자유치 정착 등 주요업무계획 수립
29. 국제금융관련 행사지원
30. 그 밖에 금융도시조성 전반에 관한 시·유관기관 협조사항 등
31. 단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방정부협의회 등 사회적경제분야 업무
3. 사회적기업 육성
4.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6 마을기업 육성·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7. 협동조합육성, 지원 업무에 관한사항
8.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위임관련 업무
9.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관련업무
10.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 공정무역에 관한 사항
12. 영등포구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추진
13. 청년활동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미래교육과) 미래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사업 계획 수립 운영
2. 우수고 육성 및 특목고 유치
3. 고등학교 및 대학 입시 관련 업무
4. 대학입학정보센터 운영
5.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6. 교육복지센터 지원
7. 장학재단 운영 지원
8. 구립도서관 운영·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9. 새마을문고 운영·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10. 공·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및 관리
11. 청소년 독서실 운영·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12. 생활과학교실 등 과학프로그램 운영
13. 과학문화도시 운영
14. 과학육성협의회 구성·운영
15. 과학문화도시 홈페이지 구축·관리
16. 과학관련 행사 운영·지원
17. 토요프로그램 운영
18. 영어교육 활성화 추진
19. 학교 교육프로그램 지원
20. 학교환경개선 지원
21. 학교 급식 지원
22.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23. 평생학습 프로그램 추진·운영 및 지원
24.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및 운영
25. 평생학습 네트워크사업 추진
26. 평생학습도시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추진
27. 구민 교양강좌 업무 추진
28. 평생학습행사 개최 및 참가
29.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0. 평생학습 성과집 발간 등 홍보
31.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32. 융합인재교육센터 운영
33. 곤충체험학습장 운영
3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35. 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관리
36. 혁신교육지원센터 운영

제2절 행정국

제8조(행정국)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청사 방호
2. 의전 및 주요 행사 운영
3. 청사 건물 유지 관리
4. 차량 및 그 밖의 행정장비 유지관리
5. 통합방위협의회 및 각종 군부대 훈련 지원
6. 예비군 지역대 지원
7. 직장 민방위대 운영
8. 재향군인회 지원

9. 공무원의 임용
10. 인사기록 관리 및 인사 통계
11. 근무성적 및 경력 평정, 서열명부 작성 관리
12. 복무 및 상훈
13. 구 인사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14. 공무원 신분 관계 제증명 및 비밀취급 인가
15. 조직 관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6. 공무원 보수 규정 및 호봉 승급에 관한 사항
17. 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8. 공무원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19. 직원 후생복지(선택적 복지, 휴양시설 등)에 관한 사항
20. 직원상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
21. 공무원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22.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에 관한 사항
23. 직원 친절교육에 관한 사항
24. 고객만족 업무에 관한 사항
25. 국제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26. 국내도시 및 단체간 교류에 관한 사항
27. 민간단체의 해외교류 사업 지원
28. 그 밖에 제반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29. 의회와 집행 기관간의 관련 업무 조정 및 총괄에 관한 사항
30. 의회 의결 및 재의 요구 사항에 대한 조정
31. 의회 행정사무 감사·조사 및 의회 접수 민원 처리 지원 및 협조
32. 그 밖에 의회 관련 지원·협조에 관한 사항
33. 청내 다른 국·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홍보전산과) 홍보전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보도자료 발굴, 제공 및 취재 지원
3. 신문·간행물 구독 관리 및 신문 광고·공고
4. 신문·방송 등 보도사항 스크랩 및 모니터링
5. 구정 홍보에 관한 사항
6. 구보 및 구정 홍보물 발간·배부에 관한 사항
7. 홍보판 등 구정 홍보 조형물 관리
8. 인터넷 방송국 및 IPTV 운영에 관한 사항
9. 영상물 및 온라인을 통한 홍보 사항
10. 구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총괄에 관한 사항
11. 국가 정보화, 행정 정보화, 지역 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
12.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정보화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4. 사랑의 PC 보급에 관한 사항

15. 다기능사무기기 구매·보급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6. 인터넷 및 전화기 시스템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7.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및 용역개발에 관한 사항
18. 정보화 사업 성과물에 대한 평가 및 운영 실적 분석에 관한 사항
19. 광대역 자가정보 통신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정보·통신 분야 신기술 도입 및 적용에 관한 사항
21. 전산·통신 장비 및 S/W 도입·보급에 관한 사항
22. 전산 및 정보 통신망 유지 관리,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23.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에 관한 사항
24. 전산 및 통신 보안, 개인 정보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25. 지역 정보 통신 사업 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6. 전산정보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27. 주전산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8. 구민과 직원 정보화 교육 및 정보화 활용에 관한 사항
29. 정보 문화 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의 지도 감독
2. 동 명칭 및 위치의 변경
3. 구·동의 행정구역 통·반 조직 및 운영
4. 동 예산 및 동 청사 관리
5. 통·반장 수당 지급
6. 기부금품 및 잡부금품 모집
7.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
8. 취학 아동에 관한 업무
9. 행정서사 등록 및 지도 감독
10. 주민등록 및 인감
11. 시민 표창에 관한 사항
12. 반상회 운영
13. 평화통일 정책 자문 회의 관련 업무
14. 동행정 관련 문서 및 회의 통제
15. 구 단위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 기본 계획 수립
16. 주민등록 전산 자료 관리
17. 동기능 전환에 따른 사무
18. 대북이탈 지원 업무
19. 적십자 회비 관련 업무
20. 국기달기 운동 지원 업무
21.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업무
22. 자원봉사활동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21. 주민자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원
22. 자치회관 운영 기본 계획 수립

23. 자치회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지원
24. 자치회관 운영예산 및 시설 관리지원
25. 자치회관 평가
26. 지역 사회 진흥 프로그램 운영지원
27. 자치회관 자원 봉사자 모집 및 관리지원
28. 자치회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등 홍보지원
29. 프로그램 강사 관리 및 교육지원
30. 주민자치 활성화 관련 행사 추진
31.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2. 새마을 금고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3. 국민운동 관련업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4.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5. 자연보호운동 및 국토대청결운동에 관한 사항
36. 기초질서 지키기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37.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사항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38. 마을공동체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39.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12조(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 접수 및 발송
2. 직인 관리 및 문서 통제
3. 민원행정서비스 관련 사항
4. 민원사무편람 정비
5. 통합증명민원 발급창구 운영
6. 수렵면허 및 외국인체류지 변경신고 처리
7. 민원24 창구운영 총괄
8. 어디서나 민원창구 운영
9. 유기한민원 접수 및 인허가증 교부
10. 민원사무 처리상황 점검
11. 새올행정시스템 인터넷민원상담 창구 운영
12.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
13. 가족관계등록 접수 및 기록
14.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 제증명 발급 및 열람
15. 수형인명부 관리 및 결격사유 조회
16. 가족관계등록 인구동태 보고
17. 가족관계등록 신고 사항 관계기관 통보
18.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
19. 제적부 전산화 재제 및 보완
20. 채무불이행자 명부 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
21. 여권 발급 신청접수 및 심사, 통계에 관한 사항
22. 여권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23. 여권 실효확인서 신청 접수 처리
24. 여권관련 신원조회 미회보처리 및 회보사항 정리
25. 제작여권 수령 및 교부에 관한 사항
26. 책자형 사증 수불관리
27. 미교부 여권 폐기 처리
28. 수입대체(수입필증)에 관한 사항
29. 여권 2회 이상 분실자 처리에 관한 사항
30. 여권발급기록조회에 관한 사항
31.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32. 기록관 운영
33. 행정기록, 역사기록 및 편찬물(시청각기록물 등) 관리
34. 구정자료 관리 및 종합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35.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36. 오케이민원에 관련된 사항

제13조(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 정책 발굴 및 문화 행사 추진
2.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
3. 구립 예술단체(합창단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연장 등록(300석 이상)에 관한 사항 및 지도 감독
5. 영화상영관 등록, 영화 상영 신고 및 지도 감독
6. 체육 관련 정보 및 통계에 관한 사항
7. 생활체육 진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생활체육 교실 및 레저 교실 등 운영
9. 생활체육 관련 단체(동호인조직)의 육성 지원
10. 체육의 날 및 체육 주간에 관한 사항
11. 체육 관련 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12. 체육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종목별 구청장기·연합회장기 대회 개최 및 지원
14. 구(동)민 체육대회 등 체육 행사(대회)에 관한 사항
15.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16. 장애인 체육에 관한 사항
17.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에 관한 사항
18. 체육시설(푸른도시과 관장시설 제외) 개발 계획 수립 및 시행
19. 공공 체육시설의 설치·유지 및 체육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공원·녹지공간 체육시설 제외)
20. 체육시설업의 신고·등록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21. 무도장, 무도학원 신고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22. 영등포스포츠센터 대행사업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
23. 수상레저기구 등록에 관한 사항
24. 체육시설업에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에 관한 위임 업무
25. 구민회관 위탁관리

26. 영등포문화원 및 영등포문화재단 지도·감독
27. 향토 문화의 보호 육성 및 발굴
28. 종무행정에 관한 사항
29. 음반·비디오물·게임물관련업 등록(신고) 및 지도 감독
30. 출판·인쇄업 신고 및 지도 감독
31. 문화재에 관한 사항
32. 노래연습장 등록(신고)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33. 비디오시청제공업 등록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34. 게임제공업 등 등록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35. 관광개발계획 수립 및 관광명소 조성
36. 관광사업(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 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 등) 계획 승인·등록 및 지도 감독
37.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및 지도·감독

제3절 재정국

제14조(재정국) 재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5조(재정관리과) 재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 세출 예산의 편성 및 재정 운용 총괄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집행 계획 및 집행 관리에 관한 사항
3. 중기 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 심사에 관한 사항
4. 지방채 및 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5. 전시 예산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예산 운용의 전산화 및 재정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7. 예산 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8. 지방재정 공시에 관한 사항
9. 예산 편성 전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10. 학술용역 심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 제안제도, 구민 창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2. 지식행정에 관한 사항
13. 구 재정 출연기관 및 법인관리에 관한 사항
14. 각종 통계 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15. 통계연보 발간에 관한 사항
16. 지방 공기업 설립, 지방 공기업 관련 법규 및 제규정 관리에 관한 사항 17. 지방 공기업에 대한 경영 지원·운영 관리 및 지도·감독 총괄에 관한 사항 18. 경영 수익 사업 및 민자유치 사업에 관한 사항 총괄
19. 민간위탁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0.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1. 자치법규 및 훈령, 고시·공고 등 중요 문서 심사
22. 자치법규집 편찬·간행 및 관리
23. 자치법규 전산 관리

24. 규제개혁 총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법률고문 운영
26.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27. 대외 평가 총괄에 관한 사항
28.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6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유(일반)재산의 관리 및 처분
2. 공유재산 관련 소송수행
3. 공유재산 관련 수입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총괄에 관한 사항
5. 도로, 하천, 구거 및 그 밖의 공공용지의 사용 허가와 관리
6. 공공용지(도로, 하천, 구거, 제방)의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 징수
7. 지하도, 지하상가의 도로 점용 허가 및 이에 관련된 사항
8. 공사 도급·물품 구매계약 등에 관한 사항
9. 조달물품 구매에 관한 사항
10. 지출원인행위부 정리
11.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12. 예산회계 결산 및 재무회계 결산
13. 금고 및 자금관리, 지출증빙서 관리
14. 원천징수 납입
15. 직원 급여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16. 세출예산 지출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7. 복식 부기 회계 업무
18.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제17조(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2. 일자리지원센터 운영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정보(구인·구직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사항
4.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에 관한 사항
5. 일자리공시제에 관한 사항
6. 청년인턴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사항
7. 일자리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8. 노동조합 설립, 변경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사항
9. 노동조합 규약의 변경, 보안 명령 등의 업무 지도
10. 노동쟁의 예방 및 조정 지도
11. 노동복지센터 및 시민명예옴브즈만 운영에 관한 사항
12. 유료·무료직업소개소 관리에 관한 사항
13.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사항
14.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 계획

15.「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허가 및 지도 감독
16. 가격 표시제 등 상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17. 물가안정 지도에 관한 사항
18.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19. 농정, 축산, 비료, 농약에 관한 사항
20. 축산물 가공업, 보관업 허가 및 지도 단속
21. 축산물 판매업, 운반업에 대한 신고 및 지도 단속
22. 동물병원관리(동물판매업) 및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23.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24. 계량기 업무에 관한 사항
25. 제조 담배 업무에 관한 사항
26. 통신·방문·전화권유판매업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7. 중소기업 지원 육성을 위한 종합 계획
28. 공장의 허가, 등록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29. 공산품 품질관리 및 위조상표 등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30. 벤처밸리 사업의 총괄 추진
31. 대부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2. 전통시장 활성화

제18조(징수과) 징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구세의 세입 분석 평가
2. 매월 세입 징수 보고서(현계표) 작성 보고
3. 시·구세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 결정 결의
4. 시·구세의 소인
5. 시·구세의 징수부 및 수납부 관리
6. 시·구세의 영수필 통지서 관리
7. 시·구세의 징수에 따른 전산 업무
8. 구세 관련 자체 조례 및 규칙 관리
9. 시·구세의 징수 결정 결의
10. 시·구세의 감액 결정 결의
11. 과오납금 환불 결정 결의 및 통지
12. 시·구세의 시효 및 불납 결손처리
13. 시·구세의 압류 재산 공매 및 환가
14. 시·구세의 체납세액 정리 보고
15. 시·구세의 체납세액 징수 및 재산 압류
16. 독촉장 송달 및 송달 불능 독촉장 처리
17. 시·구세의 징수 포상금 집행
18. 지방세 체납 조회
19. 시·구세 징수 촉탁 및 제2차 납세 의무자 지정
20. 체납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송 처리
21. 지방세 징수 관련 제도 연구

22. 시·구 세외수입 총괄
23. 각종 세외수입의 체납 관리 총괄 및 과년도 체납금 징수(일반회계에 한정함)
24. 사용료, 수수료의 요율 조정 총괄
25. 세외수입 세원 발굴
26. 세외수입 증대 방안 제도 연구 및 개선
27. 매월 세외수입 징수보고서(현계표) 작성 보고
28.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에 관한 사항

제19조(부과과) 부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레저세, 자동차세의 세원 조사 및 부과 고지와 주택 가격 평가 업무
2. 시·구세에 관한 신고와 신청 사항 처리
3. 시·구세에 관한 부과와 취소 변경 및 감면
4. 시·구세에 관한 조세 범칙 사건의 처리
5. 시·구세에 관한 과세 자료 관리
6. 시·구세에 관한 집계 및 세표의 작성 보고
7. 과세 대장 정비 및 관리
8. 구세에 관한 과세 전 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처리
9. 시·구세에 관한 소송사무 수행
10. 법인의 시·구세에 관한 세원 조사
11. 법인의 조사 계획 및 집행
12. 건물 및 그 밖의 물건 시가 표준액 결정·고시
13. 지방세 부과 제도 개선 연구
14. 주택 가격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처리
15. 주택 가격에 관한 소송 사무 수행
16. 주택 가격 조사·산정·열람·공시
17. 구세 관련 자체 조례 및 규칙 관리

제4절 복지국

제20조(복지국) 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1조(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정책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조정 업무
2. 복지정책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복지평가 및 관련 단체 관리
4.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법인 관리
6. 푸드마켓 및 뱅크 운영·지원 업무
7. 재해구호(이재민 실태 조사, 구호품 지급 등) 업무

8. 적십자봉사회 지원 업무
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리·운영
10.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11. 지역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12. 지역 자원의 발굴·동원·연계 관리에 관한 사항
13. 긴급복지 등 위기가구 지원업무
14. 복지대상자 통합사례관리 업무 및 동 단위 사례관리 지원
15. 복지서비스 통합상담 및 서비스 안내 업무
16. 사회보장 전산망 운영·관리 업무
17.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대한 조사업무
18.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한 통합관리
19. 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관리
20.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1. 동 주민센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운영·지원 업무
22. 방문형 서비스사업 통합운영·지원 업무
23. 통합사례관리사 관리 지원 업무
24. 민간서비스 제공기관 사례관리 공유 및 협력체계 운영·지원 업무
25.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연계 민간추진단 지원 업무
26. 사회복지협의회 운영·관리
27.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업무
28.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2조(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기초수급자 보장결정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수급자 법정·부가급여 지원
3.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5. 서울형기초수급자 보장결정 및 급여지원
6.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7.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업무
8.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관리
10. 자활기금관리
11. 차상위계층 임대료 보조
12. 영구 임대 주택 및 다가구 주택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13. 취약계층 주거 지원 방안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4. 주거관련 민간단체 연계에 관한 사항
15. 조건부 수급자 관리 및 자활 지원 계획 수립·시행 업무
16. 가사간병사업
17. 장애인 편의 시설 관련에 관한 사항
18. 장애인 복지 법인,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19.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관련 업무
20. 장애인 일자리 사업 및 장애인휠체어수리센터 운영지원업무
21. 장애인 복지 시설 건립
22. 장애인 수당 및 학비·의료비 지원
23. 장애인연금 업무에 관한 사항
24. 장애아동 재활치료, 장애부모 아동의 언어발달지원사업
25. 노숙인 등 대책 업무
26. 노숙인 시설 관리 업무
27. 무연고(행려) 사망자 처리에 관한 사항
28.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9.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관리
30. 장애인인식개선 지원업무에 관한사항
31.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32. 중증장애인 명절 위문품 지원

제23조(보육지원과) 보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정복지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소관 복지법인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
4. 보육 시설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보육 시설 건립 및 시설에 관한 사항
6. 보육 교사에 관한 사항
7.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예방 및 상담에 관한 사항
8. 일군위안부 등의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9. 가출 여성, 성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
10.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1. 저소득 모부자 가정, 모부자 복지 시설 지원 및 선도에 관한 사항
12. 여성 정책 수립 및 정책 개발 총괄에 관한 사항
13. 여성의 능력 개발 및 사회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14. 여성 보호 시설 관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5. 여성 복지 법인 허가·등록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6. 양성평등주간 등 남녀 평등 문화 확산 사업에 관한 사항
17. 출산장려시책에 관한 사항
18. 여성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제24조(아동청소년복지과) 아동청소년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탁아동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 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아동·청소년 복지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5. 지역 사회 공부방, 그룹홈 등 요보호 아동 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안전 협의회 운영 등 아동 안전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건전 육성 종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영등포구 청소년지원센터 등 구·시립청소년시설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9. 아동·청소년 육성관련 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10.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12.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13.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드림스타트 사업에 관한 사항
15.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업무 총괄
16.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7.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지원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8. 다문화존중 마을공동체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19.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0.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민원상담·커뮤니티 지원에 관한 사항
21.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22.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4.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5. 서남권글로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6. 그 밖에 외국인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27. 아이돌봄사업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8. 결혼중개업 신고등록에 관한 사항

제25조(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어르신복지 종합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 저소득 어르신 무료 급식소 지원 관리
3. 고령자 취업 알선에 관한 사항
4. 어르신봉사활동, 경로효친에 관한 사항
5. 어르신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6. 어르신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7. 기초연금에 관한 사업
8. 어르신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사항
9. 경로당(어르신사랑방) 운영 및 프로그램
10. 장수축하수당
11. 어르신사회활동지원사업
12. 노인복지기금에 관한 사항
13. 어르신복지 법인·단체에 관련된 사항
14. 어르신공동생활주택 운영 관리
15.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16. 어르신복지 시설 설립 및 건립에 관한 사항

17. 어르신복지 시설 등록·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8. 어르신복지 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 지원
19. 묘지, 화장장, 납골 시설 및 장례식장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0. 노인상담센터 운영

제5절 생활환경국

제26조(생활환경국) 생활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가로경관과장 및 청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푸른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7조(가로경관과) 가로경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 순찰 확인 및 가로 장애물 제거
2. 도로 일시사용 허가 및 관리
3. 가판점 등 가로 시설물 유지 관리
4. 전문건설업(가스 시공업,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포함) 등록 변경 및 신고에 관한 사항
5. 골재채취업 등록 변경 및 신고에 관한 사항
6.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7. 옥외광고물 심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옥외광고물 전수 조사 업무
9.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업무
10. 옥외광고업 신고 처리, 지도 단속 및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11. 시민 게시판 지정 및 게시대 관리 업무
12. 육교현판 사용허가 및 승인사항
13. 사설안내표지판 설치허가 및 정비
14. 광고물, 육교현판, 사설안내표지판 등의 도로점용료 조정 징수 업무
15. 옥외광고물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6. 불법 광고물 정비 및 개선 업무
17.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시범사업 포함) 조성에 관한 사항
18. 불법광고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및 고발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20. 광고물 수준 향상에 관한 업무
21. 수거 광고물 폐기 처리 업무
22. 빛공해 관련 업무
23.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8조(청소과) 청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원재활용 관련 시설·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원재활용 수집 전반에 관한 사항
3. 재활용 이행 등의 처분 및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원재활용 전반에 관한 사항

6.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영
7. 대형생활폐기물 수거 · 운반 · 처리
8. 재활용센터 관리 운영
9. 청소관련 세외수입의 현계에 관한 사항
10. 자원순환센터 운영 및 관리
11.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관한 사항
12. 생활폐기물 청소대행 용역 실시에 관한 사항
13. 생활폐기물 감량화 추진에 관한 사항
1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과징에 관한 사항
15.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 조정, 납부에 관한 사항
16. 환경미화원 임용 · 해임 및 임금지급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7.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관리 등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8.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
19. 도로청소 전반에 관한 사항
20. 청소차량 운전원 관리에 관한 사항
21.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촉진 전반에 관한 사항
2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23.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 처리업체 지도 · 감독
24.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수집 · 운반업에 관한 허가 ·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25.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신고처리 및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
26.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7. 청소차량배치, 장비관리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28. 기계, 기구류의 구입, 수선 및 유류불출 관리에 관한 사항
29. 공중 및 유료화장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30. 그 밖에 청소차량, 청소장비, 기계 기구 및 위생설비 전반에 관한 사항

제29조(환경과) 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 보전 업무 계획 수립
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징수
3. 환경보전관련 교육 · 홍보 및 시민 운동에 관한 사항
4. 환경 오염 배출 시설 설치(변경) 허가 · 신고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5. 배출 부과금 및 과태료 부과 징수
6. 무허가 배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7. 토양 오염 유발 시설에 관한 사항
8. 대기 오염 정보에 관한 사항
9. 하천 오염 감시 및 수질 개선에 관한 사항
10. 자동차 공회전에 관한 사항
11. 생활 공해(소음 · 진동, 분진, 악취 등)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12.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특정 공사장 관리
13. 다중 이용 시설 및 신축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14. 악취 발생원 관리에 관한 사항

15. 지정 폐기물, 의료 폐기물, 건설 폐기물 및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16. 중수도 관련업무
17. 저수조 청소 업체 신고 및 관리
18. 휘발성 유기 화합 물질 관련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9.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관한 허가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20.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1. 지방의제 21 관련 사항
22. 분뇨 수집·운반업 관련 허가·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23.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개인하수처리 시설 설계 등에 관한 사항
24.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허가 및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25. 지하수 영향 조사 기관 지정 및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 등록
26. 지하수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27.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28. 하수도 요금 및「지하수법」위반 과태료 체납자 징수관리
29.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30.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측정대행업 등록·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31.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관리에 관한 사항
32. 기후변화대응 및 지구온난화 방지에 관한 사항
33. 연료 안정 공급 및 수급 조절에 대한 종합 계획
34. 석유판매소 등록신고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35. 에너지 소비절약, 에너지 관리 대상자의 지정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36. 전기 사용시설물 지도 감독 및 전기 용품 단속에 관한 사항
37. 전기공사업에 관한 사항
38. 가스 안전관리 및 수급조절에 대한 종합 계획
39. 가스의 제조, 저장, 충전, 집단 공급, 판매업소 허가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40. 도시가스 보급 추진에 관한 사항
41. 도시가스 공사 계획 승인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42. 가스용품 제조사업 등 허가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43. 가스 사용 시설 신고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44. 가스 안전 관리자 선·해임에 관한 사항
45.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사항
46. 전력효율향상 사업에 관한 사항
47. 환경영향평가 및 건축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
48.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
49.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
50. 석면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제30조(푸른도시과) 푸른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 공원조성 계획 입안 및 실시계획 인가(비행정청의 도시공원 조성사업 포함)
2. 근린공원 조성 및 시설물 유지 관리
3. 공원 내 기념물 관리

4. 유원지 시설물 유지 관리
5. 어린이 공원 조성 및 유지 관리
6. 공동 주택 건설 사업 조경 분야 협의에 관한 사항
7. 도시 공원 시설 위탁 및 점용 허가
8. 공원 내 수경 시설(폭포, 분수대, 벽천) 유지 관리
9. 미시설 근린공원 및 미시설 어린이 공원 관리
10. 마을 마당 조성 및 유지 관리
11. 가로 녹지대 조성 및 유지 관리
12. 가로수 식재 및 유지 관리
13. 가로 녹지대 내 간이 휴게소 조성 및 유지 관리
14. 수림대 수벽 조성 및 유지 관리
15. 거리 환경 미화 및 노변 꽃 심기
16. 임야 보호 관리 및 산림 범법자 단속
17. 시설녹지 조성 및 유지 관리
18. 사방 조림 사업 및 지도
19. 국민 식수 및 시민 식수 추진
20. 옥상 조경 조성 및 관리
21. 양묘 사업 및 화초류의 생산업 지도 육성
22. 산림 병충해 방제
23. 임산물 수급 및 제재소의 지도 감독
24. 지정 보호수(노거수) 유지 관리
25. 수렵 지도
26. 임야 내의 위험 건물, 축대, 절개지 등 위험 시설물 관리
27. 야생 조수 불법 포획 행위 및 판매 행위 단속
28. 공원·녹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29. 야생 조수 수출·입 허가에 관한 사항
30. 도시 시설 관리 공단 대행 사업 위탁 계약에 관한 사항
31. 도시 시설 관리 공단 위탁 사무에 대한 업무 지원 및 지도·감독
32. 도시 시설 관리 공단 대행 사업의 세입 처리에 관한 사항
33. 안양·도림천 녹지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4. 생태계 보존 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5. 자연 환경 조사 및 자연 환경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36. 산·하천의 시민 보호·관리제 추진 및 자연 환경 보전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37. 야생 동·식물 보호 기본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8. 소생물권, 동·식물 서식지 조성 등 생태계 복원에 관한 사항
39. 생물종 번식·증식 및 생물종 다양성 증진에 관한 사항
40.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 관리에 관한 사항
41. 야생 동물의 구조·치료 시설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2. 훼손지의 자연 생태 복원 및 복구에 관한 사항
43. 녹지·생태 축 연결 및 생태 통로 조성에 관한 사항
44. 자연 환경 보전·이용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5. 도시림 조성 및 푸른숲 가꾸기에 관한 사항
46. 산사태 예방, 산림 병충해 방제 등 산림 보호에 관한 사항
47. 주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8.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 매수 청구에 관한 사항
49. 푸른 서울 가꾸기 수목 지원 및 아파트 담장 허물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0. 학교 공원화 조성 및 유지 관리
51. 공원 이용 활성화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52.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3. 벽면녹화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4. 공원녹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55. 소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6절 도시국

제31조(도시국) 도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주택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재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 및 부동산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2조(주택과) 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행정의 종합 및 주택통계
2.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변경 등록)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3. 주택관리업자 등록(변경 등록)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4. 임대사업자 등록(변경 등록)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5. 시영 주택의 관리
6.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의 관리
7. 주택관리업 등록
8.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9.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변경등록)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10. 임대사업자 등록
11. 임대 조건의 신고
12. 자치관리 기구 구성 신고
13. 주택관리사 자격시험 관리
14. 주택건설 사업자 행정처분
15. 관리사무소장 배치 신고 및 관련 업무
16. 주택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17.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18. 주택 재개발구역 및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 위험 건물, 축대, 절개지 등 위험시설물 관리
19. 공동주택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20. 재개발구역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국·공유지 관리
21. 신발생 무허가 건물의 발생 억제
22. 신발생 무허가 건물의 철거 및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징수

23. 기존 무허가 건물 관리
24. 철거민의 국민주택특별공급에 관한 사항
25. 항공사진 판독내용 조사 보고 및 처리
26. 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 감독
27. 30세대 이상 민영 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사항
28. 주택재건축 사업에 관한 사항
29. 분양가심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0.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3조(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기본계획 및 생활권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심권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철도, 궤도 신설은 제외)·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초조사 포함)·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관련 주민제안서의 처리 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다음의 사무(시장이 직접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도시관리계획은 제외한다)
가. 도로(폭 12미터 이하 또는 구도에 한정함)
나. 광장(폭 12미터 이하 도로 또는 구도에 접속되는 경우에 한정함)
다. 주차장(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하되,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라. 하천(소하천에 한정함)
마. 체육시설(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에 한정하되,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바. 공공공지(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에 한정함)
사. 공공청사(동주민센터, 파출소, 우체국 등 지역 단위청사에 한정함)
아.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건폐율」용적률」높이의 변경결정과 유치원·새마을유아원에 한정함) 확인요망
자. 도서관(200석 이하의 일반도서관에 한정함)
차. 수도(저수용량이 5천톤 이하의 배수지 및 가압장에 한정함)
카. 전기공급설비(소형변전소 154kv 미만 및 이와 관련되는 송배전시설에 한정함)
타. 가스공급설비(정압기 및 배관에 한정함)
파. 방수설비
하. 사회복지시설
거. 하수도(공공 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거는 제외)
너. 청소년수련시설(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에 한정함)
5.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
6. 시장이 권한 위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7.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8. 토지구획정비사업지구 내 체비지 관리
9.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사항
10.「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
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한 사항

12.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13.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14.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의 검토 및 도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15.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16.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17.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제34조(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재생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업무
6.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신길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8. 영등포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9.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0. 도시디자인사업 시행·조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도시디자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5조(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 행정의 주요 업무 계획 및 심사
2. 건축사 사무소 관리 및 건축사 지도 감독
3. 건축 관계 법규 정비
4. 건축 위원회 운영
5. 위법 건축물에 관한 사항 총괄
6. 건축물 유지 관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7. 건축 허가 및 건축물 사용검사·준공검사
8. 공사 착공 및 공사장 지도 감독
9. 건축허가 취소 및 위법 건축물 단속 및 조치(고발,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등)
10. 공사 시공자 및 감리자 지도 감독
11. 충무 계획(건물 동원에 관한 사항 등)
12. 구·동 청사, 복지 시설 등의 설계 및 시공 감독 준공에 관한 사항
13. 청사(구, 동, 구민회관)의 시설 점검, 보수에 관한 사항
14. 일반 지역 구역 내 위험 건물 및 위험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15. 건축물대장 부존재 증명서 발급
16. 건축물대장 등재(말소)
17. 건축물 소유권 변경 정리
18. 건축물대장 변경사항 정리
19.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관리
20. 건축물 안전관리

제36조(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적 제도 운영 총괄
2. 미등기 토지 소유권 확인 소송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완료 업무
4. 불합리한 행정구역 변경
5.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
6. 건축물대장 열람 및 등본교부
7. 토지거래 계약 허가·신고
8.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고 및 과태료 부과
9. 부동산매매 계약서 검인
10. 지적 통계
11. 지적 전산 시스템 운영
12. 지적 공부 관리
13.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 및 설치
14. 토지대장 소유권 변경 정리
15. 토지 이동 정리
16. 지적도 재작성 및 자료 관리
17.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등본교부
18.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19. 지적(임야)도 열람 및 등본교부
20. 부동산 평가 위원회 운영
21.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22.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지도감독
23.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24. 부동산 실거래 신고 처리
25.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운영
26.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관리 운영
27. 서울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운영
28.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
29. 도로명 부여·변경
30. 건물번호 부여·변경
31.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32. 국토정보시스템 운영(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3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34. 용도지역·지구 및 연속 도면관리
35. 지적현황측량성과 입력
36. 토지, 지장물, 영업권 보상 및 주거이전비 지급

제7절 안전교통국

제37조(안전교통국) 안전교통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로과장·치수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 및 주차문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8조(도시안전과) 도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 상황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 민관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6.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8. 재난상황 관리 및 자료수집, 분석에 관한 사항
9. 유관기관 공조체제 및 재난수습에 관한 사항
10. 재난대비 표준 매뉴얼 작성, 보급에 관한 사항
11. 재난대비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12. 안전문화운동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3.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14. 지진에 관한 제반 사항
15.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17. 한파·폭염·가뭄 대책에 관한 사항
18. 재난 관리에 관한 조례·규칙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9. 재난대비 동원자원(인적·물적) 관리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0.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점검 계획 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총괄
21. 다중이용시설 안전 지도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시설물 안전 지도에 관한 사항
23. 초고층 및 지하연계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24. 재난위험시설물 장·단기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5.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관리에 관한 사항
26.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27.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8.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29.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30. 재난취약가구 생활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3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32. 안전신고 업무에 관한 사항
33. 재난자원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34. 지역안전진단 업무에 관한 사항

35. 재난관리실태 업무에 관한 사항
36. 전시운영에 관한 사항
37. 민방위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 분석에 관한 사항
38. 민방위대 설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9. 민방위대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40. 민방위대 동원 및 이에 따른 보상 등 협의에 관한 사항
41.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42. 민방위 사태하의 주민통제 및 소산, 수송통제에 관한 사항
43.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 및 수급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다만, 민방위 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제외한다.
44. 민방공(등화, 음향관제)에 관한 사항
45. 화생방(시설, 장비, 방호 등)에 관한 사항
46. 사회복무요원 관리 총괄
47. u-city 사업발굴·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8. u-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9.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50.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9조(도로과)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 및 토목 공사 계획 수립 및 시행
2. 도로 및 토목 공사의 설계·시공 및 감독
3. 비관리청 도로 시설 공사의 협의
4. 도로 및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
5. 제설 작업의 계획 및 시행
6. 도로굴착 복구비의 부과·징수 및 굴착 복구 공사
7. 지하보도, 보도육교 및 그 부속물의 유지 관리
8. 도로 조명시설 기본계획 수립
9. 가로등, 보안등 시설 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독
10.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리
11. 지하보도 기전 시설 유지 관리
12. 도로 조명시설 대장 관리
13.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14. 도로굴착복구기금 관리
15. 도로굴착복구 감독 업무보조원 운영
16. 도로유지 보수반 운영 및 장비·자재 관리
17. 제설장비 유지 관리 및 운영

제40조(치수과) 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수 행정의 종합 조정 지도
2. 하수도 시설 계획 및 집행
3. 하천 시설 계획 및 집행, 유지 관리

4. 비관리청 하수도 시설 공사의 허가
5. 침수 지역 및 수방 대책
6. 하수도 전산시스템(하수관망도) 관리
7. 민영주택 건설사업 공공하수분야 협의(단지 내 하수 시설물 관리 감독 업무 제외)
8. 빗물 펌프장 기전 설비 운용 계획
9. 빗물 펌프장·수문 기전 설비 안전 점검 계획
10. 방재상황실 CCTV 원격 제어 설비 관리 및 운용
11. 빗물 펌프장·수문 기전설비 공사설계 및 감독
12. 빗물 펌프장 근무자 안전 교육 실시
13. 모터 펌프 등 기전 설비 기자재의 구매 설치
14. 빗물 펌프장·수문 전력 요금 수합 및 납부
15. 빗물 펌프장·수문 기전 시설물 재산 및 장비 관리
16.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17. 하수도공사장 안전점검 시행
18. 안양·도림천 자전거 및 작업도로 시설유지 관리
19. 하천순찰 및 환경(청소) 정비
20. 안양·도림천 불법낚시 행위 단속
21. 안양·도림천 수질 환경오염 행위 단속
22. 안양·도림천 불법행위(노점상, 불법주차, 가설물설치, 불법 현수막 게첨 등) 단속
23. 안양도림천 체육시설 관리

제41조(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 종합 대책 및 대중 교통 수단 파업 대책 총괄
2. 기업체 교통 수요 관리
3. 교통 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변경 등록에 관한 사항
5. 시내 버스, 마을 버스 노선 조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개인 택시 인가 및 대리 운전 신고에 관한 사항
7.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인·허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8. 사업용 자동차(여객·화물) 차고지에 관한 사항
9.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에 관한 사항
10. 승용차요일 업무에 관한 사항
11. 교통량 조사, 분석에 관한 사항
12. TSM 및 TIP 사업 검토·계획에 관한 사항
13. 교통 안전 대책 검토·계획(교통사고 다발 지점 개선, 학교 주변통학로 정비, 차없는 거리 조성 등)
14. 버스·택시 승차대 설치 건의에 관한 사항
15. 교통 영향 평가
16. 교통 소통 촉진 시책 사업 검토·계획(정체 지점 개선 사업 등)
17. 임시 운행 허가에 관한 사항
18. 건설 기계 등록에 관한 업무
19. 건설 기계 근저당권 설정·말소 등 압류에 관한 사항

20. 건설 기계 등록증·번호판 및 봉인에 관한 사항
21. 건설 기계 검사에 관한 사항
22. 건설 기계 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23. 그 밖의 건설 기계 관련 업무
24. 교통 개선 조정 심의 위원회 운영(마을 버스, 교통 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사항
25.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개시 등 신고에 관한 사항
26.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휴·폐지에 관한 사항
27. 주차 수요 예측 분석에 관한 사항
28. 일방통행에 관한 사항
29.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에 관한 사항
30. 건설 기계 말소에 관한 사항
31. 차량 교통사고에 관한 사항
32. 자동차 대여 사업에 관한 사항
33. 운송 알선업체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34.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업체 지도에 관한 사항
35. 신교통 추진에 관한 사항
36. 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협의회에 관한 사항
37. 도로표지판 설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8. 자전거 이용 증진에 관한 사항
39.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공사에 관한 사항
40. 교통 불합리 지점 개선 사업 공사에 관한 사항
41. 어린이 통학로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
42. 교통시설물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TMS 및 TIP 공사 포함)
43.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44. 건설기계 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45.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
46.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 및 봉인에 관한 사항
47. 자동차 책임 보험에 관한 사항
48.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에 관한 사항
49. 자동차 검사에 관한 사항
50. 자동차 저당권, 설정권 설정·말소 등 압류에 관한 사항
51. 자동차등록증·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에 관한 사항
52. 자가용화물자동차 차고지 사용 신고에 관한 사항
53. 무보험 차량 운행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송치에 관한 사항
54. 무적 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
55. 방치 폐차 수거 처리 및 송치에 관한 사항
56.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송치에 관한 사항

제42조(주차문화과) 주차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노상, 노외)
2. 주차장 현황 및 통계 유지 관리

3.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
4.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 및 감독
5. 주차 단속 종합계획 수립
6. 주차단속원 지도 감독(사회복무요원)
7. 주차 단속 이의 진술 처리
8. 견인 대행업소 지도, 감독
9. 장기 미반환 차량 처리
10. 시설관리공단 징수 업무 협조
11.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일반에 관한 사항
12.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에 관한 사항
13.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처리
14. 주차 구획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5. 주차 구획선 내 부정 주차 차량 지도 단속과 견인에 관한 사항
16. 이면도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7. 이면도로 주차 단속원 관리에 관한 사항
18.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19.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
20. 도시시설관리공단 위탁사무에 대한 업무 지원 및 지도·감독
21.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의 세입 처리에 관한 사항
22. 주차장 건설에 관한 사항
23. 주차 구획선, 주정차 금지선 검토 및 설치에 관한 사항
24. 주차장 부지 매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그린파킹(녹색 주차마을)에 관한 사항
26.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 등록 업무
27. 기계식 주차장치 안전도 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
28. 주차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29. 택시 운전(종사) 자격 정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0. 중고 자동차 매매업소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31. 무허가 자동차 정비 사업 단속에 관한 사항
32. 정비업체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33.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위반 자동차 단속에 관한 사항
34. 자동차 폐차 사업체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35. 교통 불편 신고 민원 처리 및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6. 정비책임자 선·해임 신고에 관한 사항
37. 버스 전용 차선 지도 감독(단속 자료 입력)에 관한 사항
38.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법규위반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
39. 택시 미터기 검정 업무에 관한 사항
40. 지정 정비 사업체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41. 운수 과징금 및 자가용 신고미필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2. 체납 운수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3. 운수 과징금 부과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
44. 버스 전용차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43조(보건소)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4조(하부조직) 보건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약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으로, 의약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5조(보건지원과) 보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
2. 보건 통계 및 보건 의료 정보의 관리
3. 문서, 보안, 관인관수, 인사, 복무에 관한 사항
4. 예산, 회계,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5. 보건소 차량 관리
6. 보건소 청사 환경 관리
7. 국민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8. 영양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9. 보건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10. 건강도시 사업에 관한 사항
11. 민원실 운영
12.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13. 진료비 및 의료수가 조정·징수에 관한 사항
14. 방역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5. 만성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급성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비상 방역약품의 관리
18. 소독업 신고 및 지도
19.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시행에 관한 사항
20. 건강플러스 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21. 헬스리셋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사항
22. 식생활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3. 금연클리닉사업에 관한 사항
24. 금연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금연관련 위반자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6. 아토피 운영에 관한 사항
27. 결핵관리사업
28. 성매개감염병관리사업
29. HIV관련 수혈자 채혈관리
30.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
31. 소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6조(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사항
3. 감염병의 예방접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 부담사업에 관한 사항
5. 방문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6. 재가 암 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7. 노인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재활 및 그 밖의 사업에 관한 사항
9.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10.치매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2.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3. 만성 퇴행성 질환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관한 사항
15. 대사증후군사업에 관한 사항
16. 대사증후군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7.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18.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19. 국가 암 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20. 쪽방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21. 치매검진 및 저소득층 치매환자 의료비지원에 관한 사항
22. 정신보건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3.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24.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에 관한 사항
25.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 지원에 관한 사항
26. 취약계층 영유아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27.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28. 지역사회기반자살예방에 관한 사항

제47조(의약과) 의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 안마사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및 의료동원에 관한 사항
5. 진료실 운영 및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6. 약사법 시행에 관한 사항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사항
8.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9. 조제실 및 의약품 수급에 관한 사항
10. 의약품 동원에 관한 사항

11.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에 관한 사항
12. 병리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
13. 물리치료실 업무에 관한 사항
14. 건강진단 사업에 관한 사항
15. 방사선 촬영에 관한 사항
16. 의료업소(의료기관, 안경업소, 치과 기공소)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17. 보건분소 운영에 관한 사항
1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 규칙에 관한 사항
19.「의료기기법」시행에 관한 사항
20. 검진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21. 의료법인 업무에 관한 사항
22.「화장품법」시행에 관한 사항
23.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
24. 약업소(의약품도매상, 약국, 한약방, 안정상비 의약품 판매자)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25. 응급환자 이송자원(구급차) 관리

제48조(위생과) 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접객업소 허가(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식품접객업소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3. 위생업소 위반사항 감시단속 업무 추진계획 수립
4. 위생업소 행정처분 및 처분업소 관리
5.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식중독 예방 관리에 관한 사항
7. 모범음식점 육성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식품 자동판매기 신고에 관한 사항
9. 식품진흥기금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0. 건강기능식품 신고에 관한 사항
11.「식품위생관리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 무허가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
12. 공중위생업소(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식품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용기·포장류 제조업) 허가(신고) 및 지도 감독
13. 부정·불량식품 지도 단속
14. 식품 수거검사
15. 음식문화개선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16. 일반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에 관한 사항
17.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8.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 및 점검에 관한 사항
19. 식품안전 통합인증제에 관한 사항
20.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제4장 하부 행정기관

제49조(동장)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따라 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0조(분장사무) 동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 직원의 인사, 복무에 관한 사항
2. 직인 관리 및 문서 통제
3. 보안 업무 및 비밀문서 관리
4. 일상경비 지출 및 정산
5. 청사 관리 및 사무비품 관리
6. 통·반장 위·해촉 대상자 추천
7. 반상회 운영 및 반상회 건의 사항 처리
8. 동정 업무 계획 및 보고회 개최
9. 시민 표창 대상자 발굴 상신
10. 동민 여론 조사 및 각종 동향 보고
11. 주민자치위원회 조직관리
12. 새마을 지도자 및 바르게 살기 협의회 조직 관리
13. 국민 운동 단체 행사 지원
14. 동 체육회 관리 지원
15.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 신청자 상담 및 관리
16. 저소득 시민 지원
17. 의료 급여 대상자 신청자 접수
18.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19. 장애인 등록·관리
20. 모·부자가정 조사 및 관리
21. 부녀회 관리 및 알뜰시장 운영 등 업무 지원
22. 노인복지 관련 업무
23. 도·농간 자매 결연 사업 지원
24.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25. 주민등록 전산 관련 업무
26. 취학 아동 명부 작성 및 취학 대상자 전·출입 관리
27. 출생 및 사망(호주상속)신고, 24호 민원 처리
28. 가족관계등록부 과태료 처분
29. 인감신고(개인, 신규) 및 증명 발급(본인, 위임)
30. 지방세, 재산세 세목별 납세증명 및 비과세 증명 발급
31. 민방위대 조직 편성, 자원 관리 및 교육 훈련
32. 인력동원 대상자 관련 및 주민 신고망 조직 운영
33. 행정감사 자료 작성
34. 감사 지적 사항 처리
35. 공휴일 재택근무 및 비상시 근무체제 유지

36. 특수 시책 추진
37.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자 추천
38. 문서관리(보존, 파기)
39. 인증기 관리
40. 어디서나 및 우편민원 처리
41. 행정 정보 공개
42. 세외수입 징수 결정 및 감액
43. 구인 구직 및 고용 촉진 훈련 신청
44. 대형생활폐기물 신고 접수
45. 자치회관 운영 관리
46. 자치회관 프로그램 개발 운영
47. 자치회관 시설관리
48.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
49.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모집·관리
50. 자치회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홍보
51. 자치회관 활성화 관련 소 축제 개최 추진
52. 폐기물 무단투기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53. 이면도로(12m 이하) 청소 및 각종 청소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54.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에 관한 사항
55. 각종 복지 대상자에 대한 심층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미래비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안 업무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기획담당관”을 “소통기획과장”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기획담당관”을 “소통기획과장”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원경찰 징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기획담당관”을 “소통기획과장”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책회의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재정국장”을 “미래비전추진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담당관”을 “재정관리과”로 한다.

제10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중 “기획담당관”을 각각 “소통기획과장”으로 한다.

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⑥「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훈령 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고 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고시 제2018 -102호

지적기준점(도근점) 측량 성과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도근점) 측량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지적기준점(도근점)

기준점 명칭 번호	ITRF2000(m)		GRS80 타원체(세계측지계)					지역측지계		표지 재질	소재지
			위도,경도,타원체고		평면직각좌표(m)		투영 원점	평면직각좌표(m)			
9194	X	-3041781.779	위 도	37-30-02.75425	X	544593.97	중부	X	444288.04	철재	대림동 665-14앞
	Y	4051637.795	경 도	126-53-51.08173	Y	190938.49		Y	190867.77		
	Z	3861652.055	타원체고	33.823							
9195	X	-3041716.581	위 도	37-30-05.04738	X	544664.72	중부	X	444358.79	철재	대림동 783-6앞
	Y	4051632.619	경 도	126-53-49.08553	Y	190889.54		Y	190818.81		
	Z	3861707.954	타원체고	33.515							
9196	X	-3041726.618	위 도	37-30-10.23899	X	544824.68	중부	X	444518.75	철재	대림동 661앞
	Y	4051504.355	경 도	126-53-52.54755	Y	190974.75		Y	190904.02		
	Z	3861835.617	타원체고	34.641							
9197	X	-3041741.624	위 도	37-30-11.25946	X	544856.11	중부	X	444550.18	표철	대림동 653-7앞
	Y	4051469.374	경 도	126-53-53.89119	Y	191007.78		Y	190937.06		
	Z	3861860.721	타원체고	34.878							
9198	X	-3041986.217	위 도	37-30-05.22000	X	544669.68	중부	X	444363.75	표철	대림동 680-7앞
	Y	4051426.845	경 도	126-54-02.89428	Y	191228.72		Y	191157.99		
	Z	3861712.616	타원체고	34.238							
9199	X	-3042029.454	위 도	37-30-04.25212	X	544639.80	중부	X	444333.87	표철	대림동 675앞
	Y	4051417.071	경 도	126-54-04.54087	Y	191269.13		Y	191198.40		
	Z	3861688.928	타원체고	34.213							
9200	X	-3042071.242	위 도	37-29-59.25109	X	544485.63	중부	X	444179.71	표철	대림동 684-14앞
	Y	4051503.191	경 도	126-54-03.79610	Y	191250.67		Y	191179.94		
	Z	3861566.684	타원체고	34.336							
9201	X	-3042057.063	위 도	37-29-58.03687	X	544448.24	중부	X	444142.31	표철	대림동 685-8앞
	Y	4051542.560	경 도	126-54-02.37215	Y	191215.66		Y	191144.93		
	Z	3861537.124	타원체고	34.564							
9202	X	-3042395.839	위 도	37-29-58.55920	X	544463.90	중부	X	444157.97	표철	신길동 431-36앞
	Y	4051278.417	경 도	126-54-19.85832	Y	191645.18		Y	191574.45		
	Z	3861551.436	타원체고	37.089							

9203	X	-3042396.391	위 도	37-30-00.44148	X	544521.90	중부	X	444215.97	표철	신길동 429-10앞
	Y	4051232.245	경 도	126-54-21.00508	Y	191673.41		Y	191602.68		
	Z	3861596.506	타원체고	35.497							
9204	X	-3042631.903	위 도	37-29-57.09233	X	544418.40	중부	X	444112.48	표철	신길동 3632-3앞
	Y	4051137.612	경 도	126-54-30.98544	Y	191918.45		Y	191847.72		
	Z	3861516.818	타원체고	39.158							
9205	X	-3042730.488	위 도	37-29-57.32160	X	544425.35	중부	X	444119.42	표철	신길동 3741-11 앞
	Y	4051057.481	경 도	126-54-36.15378	Y	192045.41		Y	191974.67		
	Z	3861521.993	타원체고	38.448							
9206	X		위 도		X	544766.05	중부	X	444460.12	표철	대림동 664앞
	Y		경 도		Y	190877.20		Y	190806.47		
	Z		타원체고								
9207	X		위 도		X	544782.93	중부	X	444477.00	표철	대림동 663앞
	Y		경 도		Y	190924.61		Y	190853.88		
	Z		타원체고								
9208	X		위 도		X	544794.26	중부	X	444488.33	표철	대림동 662앞
	Y		경 도		Y	190938.39		Y	190867.66		
	Z		타원체고								
9209	X		위 도		X	544854.18	중부	X	444548.25	표철	대림동 651앞
	Y		경 도		Y	190883.39		Y	190812.66		
	Z		타원체고								
9210	X		위 도		X	544884.20	중부	X	444578.27	표철	대림동 653앞
	Y		경 도		Y	190919.81		Y	190849.08		
	Z		타원체고								
9211	X		위 도		X	544781.47	중부	X	444475.54	표철	대림동 667-7앞
	Y		경 도		Y	191073.23		Y	191002.50		
	Z		타원체고								
9212	X		위 도		X	544642.85		X	444336.93	표철	대림동 665-4앞
	Y		경 도		Y	190975.39		Y	190904.67		
	Z		타원체고								
9213	X		위 도		X	544550.25		X	444244.36	표철	대림동 682앞
	Y		경 도		Y	191009.81		Y	190939.03		
	Z		타원체고								
9214	X		위 도		X	544659.77		X	444353.88	표철	대림동 665-8앞
	Y		경 도		Y	191058.90		Y	190988.13		
	Z		타원체고								
9215	X		위 도		X	544756.01		X	444450.10	표철	대림동 670앞
	Y		경 도		Y	191154.56		Y	191083.82		
	Z		타원체고								

9216	X		위 도		X	544711.71	중부	X	444405.79	표철	대림동 672-9앞
	Y		경 도		Y	191196.86		Y	191126.13		
	Z		타원체고								
9217	X		위 도		X	544660.14	중부	X	444354.21	표철	대림동 675-1앞
	Y		경 도		Y	191286.30		Y	191215.56		
	Z		타원체고								
9218	X		위 도		X	544626.61	중부	X	444320.68	표철	대림동 674-4앞
	Y		경 도		Y	191326.06		Y	191255.32		
	Z		타원체고								
9219	X		위 도		X	544563.05	중부	X	444257.13	표철	대림동 676-10앞
	Y		경 도		Y	191302.74		Y	191232.01		
	Z		타원체고								
9220	X		위 도		X	544538.72	중부	X	444232.80	표철	대림동 676-23앞
	Y		경 도		Y	191287.09		Y	191216.36		
	Z		타원체고								
9221	X		위 도		X	544400.72	중부	X	444094.79	표철	대림동 686-11앞
	Y		경 도		Y	191160.73		Y	191089.99		
	Z		타원체고								
9222	X		위 도		X	544362.80	중부	X	444056.88	표철	대림동 686-4앞
	Y		경 도		Y	191110.75		Y	191040.00		
	Z		타원체고								
9223	X		위 도		X	544431.86	중부	X	444125.96	표철	대림동 686앞
	Y		경 도		Y	191088.46		Y	191017.70		
	Z		타원체고								
9224	X		위 도		X	544422.36	중부	X	444116.46	표철	대림동 688-20앞
	Y		경 도		Y	191058.23		Y	190987.45		
	Z		타원체고								
9225	X		위 도		X	544413.32		X	444107.42	표철	대림동 688-4앞
	Y		경 도		Y	191031.46		Y	190960.68		
	Z		타원체고								
9226	X		위 도		X	544141.69		X	443835.79	표철	대림동 757-11앞
	Y		경 도		Y	191425.54		Y	191354.81		
	Z		타원체고								
9227	X		위 도		X	544189.67		X	443883.77	표철	대림동 751-33앞
	Y		경 도		Y	191454.82		Y	191384.09		
	Z		타원체고								
9228	X		위 도		X	544251.62		X	443945.71	표철	신길동 413-38앞
	Y		경 도		Y	191512.66		Y	191441.93		
	Z		타원체고								

9229	X		위 도		X	544346.41	중부	X	444040.50	표철	신길동 435-23앞
	Y		경 도		Y	191576.64		Y	191505.91		
	Z		타원체고								
9230	X		위 도		X	544407.54	중부	X	444101.62	표철	신길동 417-21앞
	Y		경 도		Y	191590.10		Y	191519.37		
	Z		타원체고								
9231	X		위 도		X	544460.44	중부	X	444154.51	표철	신길동 431-41앞
	Y		경 도		Y	191671.85		Y	191601.12		
	Z		타원체고								
9232	X		위 도		X	544449.38	중부	X	444143.46	표철	신길동 430-47앞
	Y		경 도		Y	191746.46		Y	191675.73		
	Z		타원체고								
9233	X		위 도		X	544450.78	중부	X	444144.86	표철	신길동 425-51앞
	Y		경 도		Y	191833.40		Y	191762.67		
	Z		타원체고								
9234	X		위 도		X	544426.71	중부	X	444120.80	표철	신길동 444-34앞
	Y		경 도		Y	191848.23		Y	191777.50		
	Z		타원체고								
9235	X		위 도		X	544260.98	중부	X	443955.07	표철	신길동 448-16앞
	Y		경 도		Y	191871.98		Y	191801.24		
	Z		타원체고								
9236	X		위 도		X	544144.34	중부	X	443838.43	표철	대림동 908-2앞
	Y		경 도		Y	191884.63		Y	191813.88		
	Z		타원체고								
9237	X		위 도		X	544070.28	중부	X	443764.37	표철	대림동 910-4앞
	Y		경 도		Y	191816.41		Y	191745.65		
	Z		타원체고								
9238	X		위 도		X	544010.01		X	443704.11	표철	대림동 903-10앞
	Y		경 도		Y	191744.17		Y	191673.42		
	Z		타원체고								
9239	X		위 도		X	543966.64		X	443660.74	표철	대림동 894-76앞
	Y		경 도		Y	191722.66		Y	191651.90		
	Z		타원체고								
9240	X		위 도		X	543887.26		X	443581.36	표철	대림동 924-3앞
	Y		경 도		Y	191631.74		Y	191560.99		
	Z		타원체고								
9241	X		위 도		X	543818.19		X	443512.28	표철	대림동 931-1앞
	Y		경 도		Y	191569.32		Y	191498.57		
	Z		타원체고								

9242	X		위 도		X	543854.24	중부	X	443548.33	표철	대림동 883-2앞
	Y		경 도		Y	191543.65		Y	191472.90		
	Z		타원체고								

기 준 원 점 명	중 부 원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686번지 일대
측 량 년 월 일	2018년 10월 22일
측량성과보관장소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
비 고	신설 49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8-104호

도로명주소 도로구간 변경 및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 도로구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고 시 일 : 2018. 11. 28.
2. 고시방법 : 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고시대상

총 계 (구 간)	위 계 구 분				비 고
	대로	로	길	기타 (종속구간)	
112	-	-	9	103	변경 1 폐지 111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02-2670-37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도로구간 변경 및 폐지 조서 1부. 끝.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구간 폐지 조서 (주도로) -8개

연번	관할 구역	도로명	폐지일자	폐지고시일자	도로 위계	광역도로구분	시점	종점	도로 길이(m)	도로 폭(m)	기초번호		도로구간의 중심선	유사도로명	폐지사유
											시점	종점			
1	영등포구	가마산로80가길	2018-11-20	2018-11-28	길	시군구도로	신길동 243-33	신길동 2278	284	6	1	30	도면참조	가마산로 외33건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	영등포구	가마산로80길	2018-11-20	2018-11-28	길	시군구도로	신길동 1828	신길동 240-10	412	6	1	40	도면참조	가마산로 외33건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3	영등포구	가마산로80나길	2018-11-20	2018-11-28	길	시군구도로	신길동 3183-92	신길동 3183-258	113	2	1	12	도면참조	가마산로 외33건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4	영등포구	신길로28가길	2018-11-20	2018-11-28	길	시군구도로	신길동 3430	신길동 3261	235	4	1	24	도면참조	신길로 외64건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5	영등포구	신길로28나길	2018-11-20	2018-11-28	길	시군구도로	신길동 3183-65	신길동 243-38	232	5	1	24	도면참조	신길로 외64건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6	영등포구	신길로28다길	2018-11-20	2018-11-28	길	시군구도로	신길동 3118	신길동 3141	215	4	1	22	도면참조	신길로 외64건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7	영등포구	신길로28라길	2018-11-20	2018-11-28	길	시군구도로	신길동 3126	신길동 3183-96	185	3	1	18	도면참조	신길로 외64건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8	영등포구	신길로34가길	2018-11-20	2018-11-28	길	시군구도로	신길동 236-27	신길동 3301	189	6	1	20	도면참조	신길로 외64건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구간 변경 조서 (주도로) -1개

연번	구분	관할 구역	도로명	도로 위계	광역도로구분	시점	종점	도로 길이(m)	도로 폭(m)	기초번호		도로구간의 중심선	유사도로명	변경사유
										시점	종점			
1	변경전	영등포구	신길로34길	길	시군구도로	신길동 237	신길동241-31	209	6	1	20	도면참조	신길로외 64건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축소변경
	변경후					신길동 237	신길동241-17	167	6	1	16	도면참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구간 폐지 조서 (종속도로) -103개

연번	도로 위계	도로명	종속구분	도로시점	도로종점	이동사유	폐지일자
1	길	가마산로80가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243-33	신길동 2278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2	길	가마산로80가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243-33	신길동 2278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3	길	가마산로80가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243-33	신길동 2278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4	길	가마산로80가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243-33	신길동 2278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5	길	가마산로80가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243-33	신길동 2278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6	길	가마산로80가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243-33	신길동 2278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7	길	가마산로80가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243-33	신길동 2278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8	길	가마산로80가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243-33	신길동 2278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9	길	가마산로80가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243-33	신길동 2278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10	길	가마산로80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1828	신길동 240-10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11	길	가마산로80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1828	신길동 240-10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12	길	가마산로80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1828	신길동 240-10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13	길	가마산로80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1828	신길동 240-10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14	길	가마산로80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1828	신길동 240-10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15	길	가마산로80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1828	신길동 240-10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16	길	가마산로80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1828	신길동 240-10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17	길	가마산로80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1828	신길동 240-10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18	길	가마산로80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1828	신길동 240-10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19	길	가마산로80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1828	신길동 240-10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20	길	가마산로80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1828	신길동 240-10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21	길	가마산로80나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183-92	신길동 3183-258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22	길	가마산로80나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183-92	신길동 3183-258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23	길	가마산로80나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183-92	신길동 3183-258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24	길	신길로28가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430	신길동 3261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25	길	신길로28가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430	신길동 3261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26	길	신길로28가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430	신길동 3261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27	길	신길로28가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430	신길동 3261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28	길	신길로28가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430	신길동 3261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29	길	신길로28가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430	신길동 3261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30	길	신길로28가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430	신길동 3261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31	길	신길로28가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430	신길동 3261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32	길	신길로28가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430	신길동 3261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33	길	신길로28가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430	신길동 3261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34	길	신길로28가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430	신길동 3261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35	길	신길로28가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430	신길동 3261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36	길	신길로28가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430	신길동 3261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37	길	신길로28가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430	신길동 3261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38	길	신길로28가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430	신길동 3261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39	길	신길로28가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430	신길동 3261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40	길	신길로28가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430	신길동 3261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41	길	신길로28가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430	신길동 3261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42	길	신길로28가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430	신길동 3261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43	길	신길로28가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430	신길동 3261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44	길	신길로28가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430	신길동 3261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45	길	신길로28가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430	신길동 3261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46	길	신길로28가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430	신길동 3261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47	길	신길로28가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430	신길동 3261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48	길	신길로28가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430	신길동 3261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49	길	신길로28가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430	신길동 3261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50	길	신길로28나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183-65	신길동 243-38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51	길	신길로28나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183-65	신길동 243-38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52	길	신길로28나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183-65	신길동 243-38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53	길	신길로28나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183-65	신길동 243-38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54	길	신길로28나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183-65	신길동 243-38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55	길	신길로28나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183-65	신길동 243-38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56	길	신길로28나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183-65	신길동 243-38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57	길	신길로28나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183-65	신길동 243-38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58	길	신길로28나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183-65	신길동 243-38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59	길	신길로28나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183-65	신길동 243-38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60	길	신길로28나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183-65	신길동 243-38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61	길	신길로28나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183-65	신길동 243-38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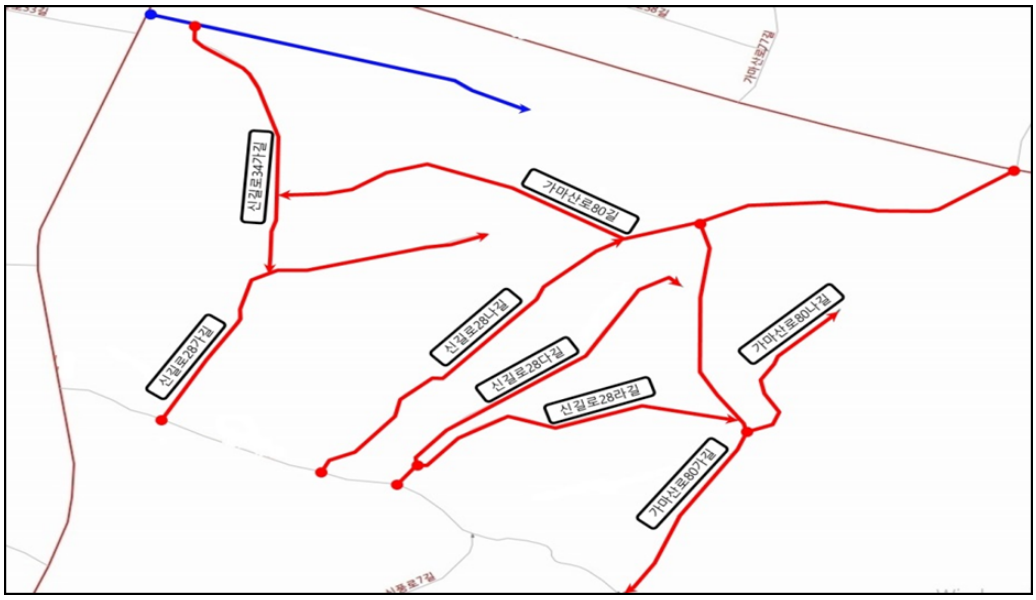
62	길	신길로28나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183-65	신길동 243-38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63	길	신길로28다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118	신길동 3141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64	길	신길로28다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118	신길동 3141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65	길	신길로28다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118	신길동 3141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66	길	신길로28다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118	신길동 3141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67	길	신길로28라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126	신길동 3183-96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68	길	신길로28라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126	신길동 3183-96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69	길	신길로28라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126	신길동 3183-96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70	길	신길로28라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126	신길동 3183-96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71	길	신길로28라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126	신길동 3183-96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72	길	신길로34가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236-27	신길동 3301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73	길	신길로34가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236-27	신길동 3301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74	길	신길로34가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236-27	신길동 3301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75	길	신길로34가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236-27	신길동 3301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76	길	신길로34가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236-27	신길동 3301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77	길	신길로34가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236-27	신길동 3301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78	길	신길로34가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236-27	신길동 3301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0
79	로	가마산로	1차 종속도로	대림동 777-1	신길동 699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1
80	로	가마산로	1차 종속도로	대림동 777-1	신길동 699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1
81	로	가마산로	1차 종속도로	대림동 777-1	신길동 699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1

82	로	가마산로	1차 종속도로	대림동 777-1	신길동 699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1
83	로	가마산로	1차 종속도로	대림동 777-1	신길동 699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1
84	로	가마산로	1차 종속도로	대림동 777-1	신길동 699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1
85	로	가마산로	1차 종속도로	대림동 777-1	신길동 699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1
86	로	가마산로	1차 종속도로	대림동 777-1	신길동 699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1
87	로	가마산로	1차 종속도로	대림동 777-1	신길동 699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1
88	로	가마산로	1차 종속도로	대림동 777-1	신길동 699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1
89	로	신길로	1차 종속도로	대림동 948-1	영등포동1가 96-4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1
90	로	신길로	1차 종속도로	대림동 948-1	영등포동1가 96-4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1
91	로	신길로	1차 종속도로	대림동 948-1	영등포동1가 96-4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1
92	길	신길로28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483	신길동 2015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1
93	길	신길로28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483	신길동 2015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1
94	길	신길로28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483	신길동 2015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1
95	길	신길로28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483	신길동 2015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1
96	길	신길로28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483	신길동 2015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1
97	길	신길로28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483	신길동 2015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1
98	길	신길로28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483	신길동 2015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1
99	길	신길로28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483	신길동 2015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1
100	길	신길로28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483	신길동 2015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1
101	길	신길로28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483	신길동 2015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1
102	길	신길로28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483	신길동 2015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1
103	길	신길로28길	1차 종속도로	신길동 3483	신길동 2015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따른 도로구간 폐지	2018-1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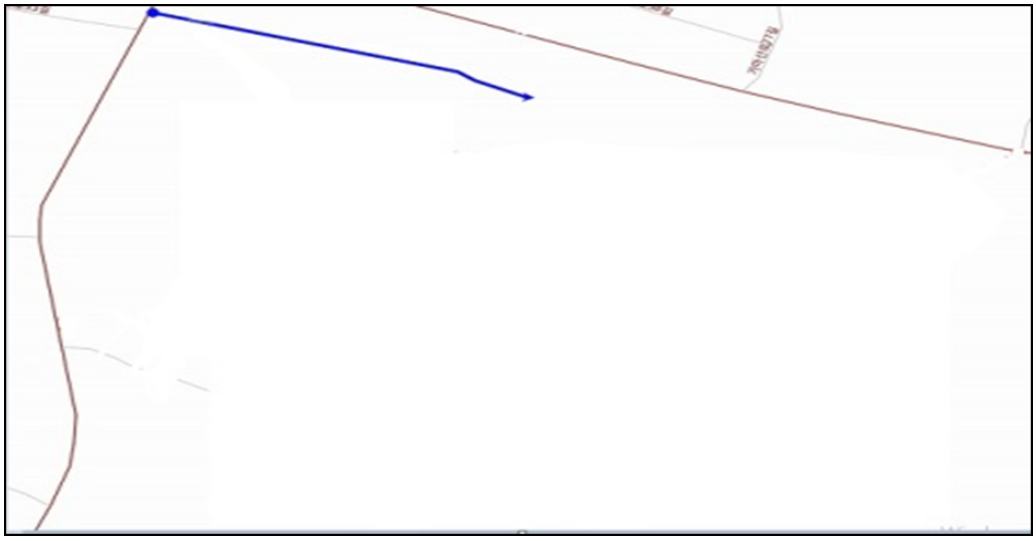
※ 참조도면 생략

(1) 도로구간 폐지 도면

<폐지 전>



<폐지 후>



(2) 도로구간 변경 도면 (신길로34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8-105호

도로명주소 부여,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천로 385-6(대림동) 외 58건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02-2670-3724)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조서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1060-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천로 385-6 (대림동)	2018-11-28	2010-04-22	도림천을 따라 형성된 도로로서 도림천 지명 인용	신규부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217-1, 216-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0 (당산동6가)	2018-11-28	2010-05-27	양평동 동명칭 인용	신규부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26-10, 226-4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45길 11-1 (신길동)	2018-11-28	2010-05-27	신길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신규부여

■ 도로명주소 폐지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고시일	비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526-3 (신길동)	2018-11-22	2018-11-28	재정비 촉진구역 편입에 의한 건물번호 직권 폐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128-2 (신길동)	2018-11-22	2018-11-28	재정비 촉진구역 편입에 의한 건물번호 직권 폐지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3길 52-1 (신길동)	2018-11-22	2018-11-28	재정비 촉진구역 편입에 의한 건물번호 직권 폐지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3길 42 (신길동)	2018-11-22	2018-11-28	재정비 촉진구역 편입에 의한 건물번호 직권 폐지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3길 46-7 (신길동)	2018-11-22	2018-11-28	재정비 촉진구역 편입에 의한 건물번호 직권 폐지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3나길 13 (신길동)	2018-11-22	2018-11-28	재정비 촉진구역 편입에 의한 건물번호 직권 폐지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3다길 10-8 (신길동)	2018-11-22	2018-11-28	재정비 촉진구역 편입에 의한 건물번호 직권 폐지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3다길 10-3 (신길동)	2018-11-22	2018-11-28	재정비 촉진구역 편입에 의한 건물번호 직권 폐지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3다길 10-6 (신길동)	2018-11-22	2018-11-28	재정비 촉진구역 편입에 의한 건물번호 직권 폐지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3다길 8-2 (신길동)	2018-11-22	2018-11-28	재정비 촉진구역 편입에 의한 건물번호 직권 폐지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3다길 8-1 (신길동)	2018-11-22	2018-11-28	재정비 촉진구역 편입에 의한 건물번호 직권 폐지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3다길 6-2 (신길동)	2018-11-22	2018-11-28	재정비 촉진구역 편입에 의한 건물번호 직권 폐지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3다길 6-3 (신길동)	2018-11-22	2018-11-28	재정비 촉진구역 편입에 의한 건물번호 직권 폐지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3다길 8 (신길동)	2018-11-22	2018-11-28	재정비 촉진구역 편입에 의한 건물번호 직권 폐지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3다길 10 (신길동)	2018-11-22	2018-11-28	재정비 촉진구역 편입에 의한 건물번호 직권 폐지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3다길 10-4 (신길동)	2018-11-22	2018-11-28	재정비 촉진구역 편입에 의한 건물번호 직권 폐지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3다길 10-1 (신길동)	2018-11-22	2018-11-28	재정비 촉진구역 편입에 의한 건물번호 직권 폐지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3다길 9-3 (신길동)	2018-11-22	2018-11-28	재정비 촉진구역 편입에 의한 건물번호 직권 폐지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3라길 8-2 (신길동)	2018-11-22	2018-11-28	재정비 촉진구역 편입에 의한 건물번호 직권 폐지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3라길 12 (신길동)	2018-11-22	2018-11-28	재정비 촉진구역 편입에 의한 건물번호 직권 폐지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3라길 11-1 (신길동)	2018-11-22	2018-11-28	재정비 촉진구역 편입에 의한 건물번호 직권 폐지
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3라길 5 (신길동)	2018-11-22	2018-11-28	재정비 촉진구역 편입에 의한 건물번호 직권 폐지
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3마길 3-3 (신길동)	2018-11-22	2018-11-28	재정비 촉진구역 편입에 의한 건물번호 직권 폐지
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9가길 2 (신길동)	2018-11-22	2018-11-28	재정비 촉진구역 편입에 의한 건물번호 직권 폐지
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9가길 10 (신길동)	2018-11-22	2018-11-28	재정비 촉진구역 편입에 의한 건물번호 직권 폐지

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9가길 10-1 (신길동)	2018-11-22	2018-11-28	재정비 촉진구역 편입에 의한 건물번호 직권 폐지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9길 29 (신길동)	2018-11-22	2018-11-28	재정비 촉진구역 편입에 의한 건물번호 직권 폐지
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9길 17-1 (신길동)	2018-11-22	2018-11-28	재정비 촉진구역 편입에 의한 건물번호 직권 폐지
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9길 17 (신길동)	2018-11-22	2018-11-28	재정비 촉진구역 편입에 의한 건물번호 직권 폐지
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9길 15-3 (신길동)	2018-11-22	2018-11-28	재정비 촉진구역 편입에 의한 건물번호 직권 폐지
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9길 13-1 (신길동)	2018-11-22	2018-11-28	재정비 촉진구역 편입에 의한 건물번호 직권 폐지
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9길 9 (신길동)	2018-11-22	2018-11-28	재정비 촉진구역 편입에 의한 건물번호 직권 폐지
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9길 5-1 (신길동)	2018-11-22	2018-11-28	재정비 촉진구역 편입에 의한 건물번호 직권 폐지
3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9길 5-2 (신길동)	2018-11-22	2018-11-28	재정비 촉진구역 편입에 의한 건물번호 직권 폐지
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9길 5 (신길동)	2018-11-22	2018-11-28	재정비 촉진구역 편입에 의한 건물번호 직권 폐지
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9나길 6-3 (신길동)	2018-11-22	2018-11-28	재정비 촉진구역 편입에 의한 건물번호 직권 폐지
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9나길 11-5 (신길동)	2018-11-22	2018-11-28	재정비 촉진구역 편입에 의한 건물번호 직권 폐지
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9나길 2-2 (신길동)	2018-11-22	2018-11-28	재정비 촉진구역 편입에 의한 건물번호 직권 폐지
3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9나길 2 (신길동)	2018-11-22	2018-11-28	재정비 촉진구역 편입에 의한 건물번호 직권 폐지
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9나길 2-1 (신길동)	2018-11-22	2018-11-28	재정비 촉진구역 편입에 의한 건물번호 직권 폐지
4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9나길 4 (신길동)	2018-11-22	2018-11-28	재정비 촉진구역 편입에 의한 건물번호 직권 폐지
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9나길 4-2 (신길동)	2018-11-22	2018-11-28	재정비 촉진구역 편입에 의한 건물번호 직권 폐지
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9나길 4-1 (신길동)	2018-11-22	2018-11-28	재정비 촉진구역 편입에 의한 건물번호 직권 폐지
4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9나길 6 (신길동)	2018-11-22	2018-11-28	재정비 촉진구역 편입에 의한 건물번호 직권 폐지
4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9나길 3-4 (신길동)	2018-11-22	2018-11-28	재정비 촉진구역 편입에 의한 건물번호 직권 폐지
4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9나길 3-6 (신길동)	2018-11-22	2018-11-28	재정비 촉진구역 편입에 의한 건물번호 직권 폐지
4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9나길 3-8 (신길동)	2018-11-22	2018-11-28	재정비 촉진구역 편입에 의한 건물번호 직권 폐지
4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9나길 1-2 (신길동)	2018-11-22	2018-11-28	재정비 촉진구역 편입에 의한 건물번호 직권 폐지
4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9다길 2-4 (신길동)	2018-11-22	2018-11-28	재정비 촉진구역 편입에 의한 건물번호 직권 폐지
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9다길 6 (신길동)	2018-11-22	2018-11-28	재정비 촉진구역 편입에 의한 건물번호 직권 폐지
5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9다길 9-3 (신길동)	2018-11-22	2018-11-28	재정비 촉진구역 편입에 의한 건물번호 직권 폐지
5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45길 11-1 (신길동)	2018-11-23	2018-11-28	건축물 철거

5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36길 8-9 (신길동)	2018-11-26	2018-11-28	대장 말소
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40길 11 (신길동)	2018-11-26	2018-11-28	대장 말소
5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41길 28-1 (신길동)	2018-11-26	2018-11-28	대장 말소
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41길 28-2 (신길동)	2018-11-26	2018-11-28	대장 말소

공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8-1530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용

연번	인증번호	상 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1	서울영등포 제8-1-20호 (2018년)	동원산전(주) 이종기	DW-CV6-52 -CL	평면왕복식, 6단 운반식(횡식) 52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	2018. 11.19.
2	서울영등포 제8-1-21호 (2018년)	동원산전(주) 이종기	DW-CV6-66 -M	평면왕복식, 6단 운반식(횡식) 66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	2018. 11.19.

○ 문의: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02-2670-3903